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594호 2021. 5. 3(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65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68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9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 5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58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 ----- 89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2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91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 95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7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11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1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5호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12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2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75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정공부 확정시행 공고 ---- 1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76호 보상계획(변경) 공고 ---------- 13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14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1호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14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3호 경서3구역 지장물(존치건물 경계) 보상계획 열람·공고
---------- 19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5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 2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9호 국·공유지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2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0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23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23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247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담당관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각각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92명”을 “1,3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72명”을 “1,37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1,39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85	-				
2급	1	1				
4급	8	6	1	1		
5급	73	39	2	8	1	23
6급 이하 계	1,303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				
별정직 계	3	-				
6급 상당 이하 계	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로, “공원녹지과, 위생과”를 “공원녹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5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0호 및 9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0.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가스관련법 사무

91.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제7조의3제1항 중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교통정책과”를 “식품

산업위생과, 교통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위생용품제조업 등 인·허가 및 지도·단속

29. 음식문화 개선관리

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2.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과, 치매돌봄과”를 “치매정신돌봄과”로 한다.

제17조제15호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로 한다.

별표 4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을 “미래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실·과·소”를 ”실·국·담당관·단·과·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기획실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경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제6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를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1의 의료·구호지원반란 중“예방의약담당”을 “의약관리담당”으로, “질병관리담당”을“감염병예방담당 ”으로, 같은 표 재정·홍보지원반란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같은 표 통신·전산지원반란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을 “실장,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별표 1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예산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서구 주관부서란 중 “홍보정책과”를 각각 “홍보정책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5 가. 경계단계 실무반란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나. 비상1단계 실무반란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다. 비상2~3단계 실무반란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

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6 실무반란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미래도시국장”을 “미래기획실장”으로 한다.

[별표 4]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 희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청라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67번길 10(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3(원당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한다.

별표 3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세무1과 세무2과	1 2 3 4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 부과 징수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가. 면허분 나. 등록분 중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다. 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지방세법」 제116조 -「지방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0조 및 32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	

별표 4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하고, 자원순환과란 다음에 토지정보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토지정보과	1	임대차 계약 다음 신고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가. 체결 나. 변경 다. 해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중 토지정보과 위임사무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65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

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채·공채 이자율 수준,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실·국·소장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각 단·실·관·과·소·동”을 “본청 각 부서 및 소·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식지는 각 동 통·반장이 무상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등을 이용해 배부할 수도 있다.

제16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 중 “소식지에 투고”를 “독자 투고, 이벤트, 퀴즈, 공모전, 설문조사 등에 참여”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고료 등 지급내역(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원고료 등	비 고
전문기고	- 논평, 수필, 시, 연재소설, 영어 등 ·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 1편당 100,000원 · 200자 원고지 10매 초과 : 1매당 × 10,000원 - 만화, 만평 등 · 1편당 50,000원	* 원고료 등은 현금, 상품권, 전자상품권, 할인권, 전자할인권, 서구지역화폐'서로e음', 기념품, 이모티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민참여	- 독자 투고 및 인터뷰 등 참여자 · 1편당 50,000원 - 이벤트, 퀴즈, 공모전, 설문조사 당첨자 · 1명당 30,000원 이내	
명예기자	- 1편당 50,0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장수란의 “22”를 “23”으로, 행정운영동인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신현원창동 및 원당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운영동의 마전동란 다음에 아라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서구	계	23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1	검암경서동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일원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1	연희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일원
	청라동	3	청라1동	- 청라국제도시 내 봉수대로 기준 서측, 중봉대로 기준 동측 청라동 일원 청라동 1-1060, 1-1061, 1-1063, 1-1064, 1-1074, 1-1114, 1-1123, 1-1125, 1-1130, 1-1132, 1-1145, 1-1152, 1-1155, 1-1163 ~ 1-1165, 1-1177, 1-1179, 1-1190, 1-1203, 1-1206, 1-1206, 1-1260, 1-1263 ~ 1-1265, 1-1304, 1-1305, 1-1311, 1-1327, 1-1328, 1-1330, 1-1334 ~ 1-1337, 1-1739, 4-1, 4-5, 101-14, 112-33, 112-34,116-2 ~ 116-10, 117-1 ~ 117-24, 118-1 ~ 118-9, 119-1 ~ 119-15, 120-1 ~ 120-9, 121-1 ~ 121-24, 122-1 ~ 122-9, 123-1~ 123-16, 124-1 ~ 124-9, 125-1 ~ 125-7, 126-1 ~ 126-8. 127-1 ~ 127-12, 128-1 ~ 128-8, 129-1 ~ 129-12, 130-1 ~ 130-8, 131-2~ 131-29, 132-1 ~ 132-7, 133-1 ~ 133-32, 134-1 ~ 134-10, 135-1 ~ 135-4, 136-1 ~ 136-17, 137-1 ~ 137-10, 160-1 ~ 160-5, 161-1 ~ 161-3, 162-1 ~ 162-26, 163-1 ~ 163-3, 164-1 ~ 164-3, 165-1 ~ 165-18, 166-1 ~ 166-5, 167-1 ~ 167-33, 168-1 ~ 168-4, 169-1 ~ 169-11, 170-1 ~ 170-17, 171-1 ~ 171-24, 172-2 ~ 172-9, 172-13, 185-1 ~ 185-5, 186-1 ~ 186-17, 187-1 ~ 187-6, 188-1 ~188-5, 189-1 ~ 189-17, 190-1 ~ 190-6, 191-1 ~ 191-6, 192-1 ~ 192-4, 193-1 ~193-4, 202-1 ~ 202-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청라1동	202-7 ~ 202-9, 202-12, 202-14 ~ 202-16, 203 ~ 203-3, 203-5, 204-1 ~ 204-6, 204-8 ~ 204-10, 205-1 ~ 205-5, 206-2, 206-4, 207-1 ~ 207-5, 207-7
			청라2동	- 청라국제도시 내 중봉대로 기준 서측, 청라대로 기준 동측 청라동 일원 청라동1-622 ~ 1-634, 1-668, 1-671, 1-733, 1-787 ~ 1-795, 1-797, 1-801, 1-857 ~ 1-868, 1-937~ 1-949, 1-952, 1-953, 1-961~ 1-966, 1-1048, 1-1051, 1-1052, 1-1072, 1-1087, 1-1096 ~ 1-1121, 1-1128, 1-1129, 1-1208 ~ 1-1215, 1-1217, 1-1218, 1-1223 ~ 1-1245, 1-1247 ~ 1-1255, 1-1266 ~ 1-1273, 1-1277, 1-1309, 1-1332, 1-1338~ 1-1353, 1-1355, 1-1358, 1-1360, 9-1 ~ 9-91, 9-93, 9-95, 9-96, 9-98 ~ 9-102, 9-104, 9-106, 9-107 ~ 9-138, 9-140, 9-142, 9-144, 9-146, 10-1 ~ 10-3, 10-5, 10-6, 101-12, 101-13, 106-2, 106-3, 106-5, 106-6, 107-1~ 107-5, 108-1 ~ 108-29, 109-1~ 109-11, 109-13 ~109-33,110-1 ~ 110-13, 111-1 ~ 111-38, 111-40 ~ 111-47, 121-1 ~ 121-32, 113-1 ~ 113-5, 113-7 ~ 113-13, 114-1 ~ 114-28, 115-1 ~ 115-7, 139-1 ~ 139-5, 140-1 ~ 140-5, 141-1 ~ 141-13, 142-1 ~ 142-21, 143-1 ~ 143-13, 144-1 ~ 144-28, 145-1 ~ 145-19, 146-1 ~ 146-13, 147-1 ~ 147-19, 148-1 ~ 148-14, 149-1 ~ 149-5, 150-1 ~ 150-6, 151-1 ~ 151-5, 152-1 ~ 152-24, 153-1 ~ 153-5, 154-1 ~ 154-6, 155-1 ~ 155-29, 156-1 ~ 156-5, 157-1 ~ 157-23, 158-1 ~ 158-3, 159-1 ~ 159-5, 173-1 ~ 173-10, 174-1 ~ 174-17, 175-1 ~ 175-14, 176-1 ~ 176-11, 177-1 ~ 177-15, 178-1 ~ 178-10, 179-1 ~ 179-13, 180-1 ~ 180-14, 181-1 ~ 181-14, 182-1 ~ 182-11, 183-1 ~ 183-5, 184-1 ~ 184-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청라3동	-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기준 서측 청라동 일원 청라동 1-3 ~ 1-10, 1-101 ~ 1-266, 1-269 ~ 1-286, 1-289 ~ 1-294, 1-296 ~ 1-580, 1-582 ~ 1-621, 1-635, 1-637 ~ 1-666, 1-669, 1-673, 1-674, 1-676 ~ 1-731, 1-734 ~ 1-786, 1-796, 1-798 ~ 1-800, 1-802 ~ 1-856, 1-869 ~ 1-936, 1-955 ~ 1-960, 1-968 ~ 1-1050, 1-1054 ~ 1-1059, 1-1065~ 1-1071, 1-1075 ~ 1078, 1-1088, 1-1091, 1-1092, 1-1095, 1-1256, 1-1357, 1-1359, 1-1362 ~1-1454, 1-1456 ~ 1-1462, 1-1465 ~ 1-1543, 1-1545 ~ 1597, 1-1599, 1-1601 ~ 1-1877, 1-1879, 1-1880, 1-1882 ~ 1-1934, 1-1936, 2-1, 2-3, 2-4, 2-6 ~ 2-9, 2-12 ~ 2-23, 3-1 ~ 3-37, 3-39 ~ 3-47, 3-49 ~ 3-53, 5-1 ~ 5-17, 5-19 ~ 5-46, 5-48 ~ 5-74, 6-6 ~ 6-9, 6-11 ~ 6-16, 6-18, 6-23, 7-1 ~ 7-5, 7-9 ~ 7-19, 8-1 ~ 8-124, 8-126 ~ 8-134, 8-137 ~ 8-169, 11-4, 11-6 ~ 11-19, 11-22 ~ 11-51, 11-58 ~ 11-67, 11-69, 11-70, 13-1 ~ 13-26, 14-1 ~ 14-17, 14-19 ~14-23, 15-1 ~ 15-5, 16, 17, 18, 19, 20-1 ~ 20-24, 21-1 ~ 21-10, 22, 23, 24, 25-2 ~ 25-25, 26, 27, 28, 29-1 ~ 27-37, 30, 31, 32, 33, 34, 35, 36-1 ~ 36-30, 37, 38, 39, 40-1 ~ 40-20, 41-1 ~ 41-16, 42, 43, 44, 45, 46-1 ~ 46-53, 47, 48, 49, 50, 51, 52, 53, 54, 55-1 ~ 55-20, 56-1 ~ 56-7, 57-1 ~ 57-6, 58, 59, 60, 61, 62-1 ~ 62-36, 63, 64, 65, 66, 67, 68, 69, 70, 71-1 ~ 71-51, 72, 73, 74, 75, 76-1 ~ 76-7, 77-1 ~ 77-26, 78, 79, 80, 81, 82-1 ~ 82-3, 83-1 ~83-4, 84-1, 84-2, 84-5 ~ 84-13, 85-1 ~ 85-6, 88, 89-3, 89-4, 89-7, 92-1, 92-2, 92-5, 92-8, 92-12, 92-15, 92-18,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청라3동	92-20 ~ 92-29, 95-1 ~ 95-5, 96-1 ~ 96-3, 96-7 ~ 96-22, 97-1 ~ 97-5, 98-3, 99-8, 100-51 ~ 100-82, 100-84 ~ 100-92, 100-94 ~ 100-96, 101-8 ~ 101-10, 102-1 ~ 102-20, 103-1 ~ 103-30, 104-1 ~ 104-80, 104-82 ~ 104-218, 105-1 ~ 105-155, 194-2, 24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신현동 원창동	1	신현원창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1	원당동	당하동 1, 2-1, 2-2, 2-4, 2-5, 2-7, 3-1, 3-5, 3-7, 3-9 ~ 3-12, 4, 4-3, 5, 5-5, 8-1, 12-2, 12-4, 17-6, 17-8, 17-1, 19-1, 21, 53, 54, 57, 57-3 ~ 57-10, 57-13, 60, 60-1, 61, 61-1 ~ 61-6, 61-8 ~ 61-11,62, 62-1, 62-3, 62-5 ~ 62-13, 62-15, 63, 63-3, 71-6, 71-7, 74, 76-3, 76-4, 77, 78-1, 78-2, 79-1 ~ 79-11, 79-13, 80, 80-1, 81-1 ~ 81-3, 82-1 ~ 82-3, 83-1, 84-1 ~ 84-5, 85-1, 85-2, 86, 87-1 ~ 87-8, 88, 89-1 ~ 89-5, 89-7 ~ 89-10, 90-1 ~ 90-5, 91-1, 91-2, 92-1 ~ 92-5, 93-1 ~ 93-5, 94-1 ~ 94-3, 95, 95-1 ~ 95-5, 96, 96-1 ~ 96-7, 97 ~ 111, 99-1 ~ 99-5, 102-1, 102-3, 102-4, 112-1 ~ 112-5, 113, 113-1, 114, 115, 115-1, 116-1 ~ 116-3, 117-1, 117-3 ~ 117-6,118, 118-1 ~ 118-7, 119, 120, 122, 122-1, 122-3, 122-5 ~ 122-7, 123, 123-1, 123-3 ~ 123-5, 125,133-1 ~ 133-3, 188, 214-2, 214-3, 215-1, 215-5, 215-7, 216-2, 216-3, 218, 218-1, 219, 220-1 ~ 220-3, 221-1 ~ 221-4, 223-1, 223-5 ~ 223-7, 223-12, 223-13, 225 ~ 227, 228-1, 228-3, 229, 229-1, 230-1, 230-3 ~ 230-5, 231-1, 231-3, 233-1 ~ 233-3, 234, 235-1 ~ 235-3, 236, 237, 237-1 ~ 237-9, 237-4 ~ 237-9, 238 ~ 241, 241-1, 243, 247, 248-1, 248-3, 249-1, 250-1, 250-2, 323-1, 323-3, 391, 491-2, 491-3, 626, 626-2 ~ 626-5, 639-1, 639-2 640-1, 640-2, 641, 641-1, 642, 643, 644-2, 645, 645-1, 646-1, 646-3, 650, 651, 652-2, 653-1 ~ 653-5, 654, 654-1, 654-2, 655, 655-1, 655-3, 656-1 ~ 656-3, 659-1 ~ 659-5, 660-4, 661-12, 662-1 ~662-3, 663, 663-2, 664, 665, 665-1 ~ 665-4, 666, 666-1, 666-2, 667 ~ 670, 671-1, 671-4, 671-7 ~ 671-10, 672-1 ~ 672-3, 672-5 ~ 672-8, 673, 674-1 ~ 674-4, 675 ~ 678, 679-1, 679-2, 679-3,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원당동	당하동 680-1, 681-1, 681-2, 682, 683-1, 683-2, 684, 685-1, 685-2, 685-3, 686-1 ~ 686-3, 687, 689-1 689-3, 690, 690-1 ~ 690-3, 691-1 ~ 691-5, 692-2 ~ 692-4, 693 693-1 ~ 693-6,695-1, 695-2, 696-1 ~ 696-7, 697-1 ~ 697-3, 698-1, 699, 699-1 ~ 699-10, 700, 701, 701-1 ~ 701-4, 701-6 ~ 701-18, 702, 702-1, 702-3 ~ 702-7, 703-1 ~ 703-7, 704, 704-1 ~ 704-3, 705-1 ~ 705-6, 706-1 ~ 706-3, 707-1, 707-2, 707-5, 707-6, 708, 708-2, 708-3, 709-2, 710, 710-2 ~ 710-5, 711 ~ 713, 713-2 ~ 713-4, 714-1, 714-2, 715, 716, 716-1, 717, 717-4, 717-5, 718, 719-4, 719-5, 720-2, 720-3, 721-1, 721-4, 722, 724, 724-1, 725-1, 726, 726-1, 726-2,726-5 ~ 726-8, 726-11 ~ 726-32,727-2, 727-5 ~ 727-8, 728, 728-1, 728-3, 728-4, 729, 729-2, 729-5, 729-8, 729-9, 730, 730-1, 732, 732-1, 733-1 ~ 733-7, 734-1, 734-4 ~ 734-12, 735-1 ~ 735-8, 735-10 ~ 735-14, 736-1, 736-2, 737-1, 737-2, 738,739-1, 740-1 ~ 740-5, 740-6, 741-1 ~ 741-9, 742-1, 743-1, 743-5, 743-6, 744, 744-1, 744-2, 744-5, 745-2, 745-3, 746-1, 746-3 ~ 746-9, 747, 747-3, 748-1 ~ 748-3, 748-6, 748-7, 748-9, 749-1 ~ 749-8, 749-12, 749-13, 749-15 ~ 749-29, 749-31 ~ 749-38, 750-1 ~ 750-3, 750-5, 750-6, 750-10 ~ 750-22, 751-1, 752, 964-16 ~ 964-18, 981-2, 983-3, 984-1, 985-1, 988, 989, 989-1 ~ 989-12, 990, 990-1 ~ 990-4, 991, 996-1, 996-3, 997, 997-1, 998, 1019-1 ~ 1019-5, 1020-1 ~ 1020-9, 1021-1 ~ 1021-8, 1022, 1022-1, 1023, 1023-1 ~ 1023-5 1024, 1025, 1025-1 ~ 1025-11, 1026, 1026-1 ~ 1026-13, 1027-1 ~ 1027-3, 1027-14 ~ 1027-19, 1028-1 ~,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원당동	당하동 1028-24, 1029-1 ~ 1029-10, 1030-1 ~ 1030-9, 1031, 1031-1, 1032, 1033-1, 1033-2, 1033-3, 1033-5 ~ 1033-10, 1034-1 ~ 1034-4, 1035, 1036-1, 1036-2, 1037-1 ~ 1037-6, 1038-1 ~ 1038-6, 1039-1 ~ 1039-16, 1040, 1040-1 ~ 1040-3, 1042-1 ~ 1042-4, 1043-1 ~ 1043-9, 1044-1 ~ 1044-12, 1045-1 1045-13, 1046-1 ~1046-4, 1047-1 ~ 1047-6, 1048-1 ~ 1048-11, 1049 ~ 1061, 1061-1, 1062 ~ 1064, 산41-2, 산48 ~ 산50, 산51-1, 산52, 산53-1, 산54, 산54-1, 산55-4, 산55-5, 산55-11, 산68-1, 산69 ~산73, 산74-1, 산74-2, 산75, 산75-1, 산76, 산77-1, 산78, 산79-2, 산80-1, 산81, 산83, 산84, 산85-1, 산87, 산89, 산92-1, 산92-2, 산92-4, 산93, 산93-2 ~ 산93-9, 산94, 산94-2, 산100-5, 산100-6, 산100-9 ~ 산100-12,산100-15, 산100-16, 산100-18, 산100-19, 산100-21 ~ 산100-26, 산103, 산103-2 ~ 산103-5, 산104, 산105-5, 산105-7, 산105-9, 산105-13, 산105-17, 산105-20, 산105-26 ~ 산105-29, 산106-1, 산107,산107-1, 산108-1 ~산108-5, 산109-1, 산110-1,산113-2, 산114, 산114-2 ~ 산114-6, 산115, 산115-2, 산115-3, 산115-5, 산116-3 ~ 산116-5, 산117-1 ~ 산117-3, 산117-6, 산118-1 ~ 산118-4, 산118-6, 산118-10, 산118-12 ~ 산118-14, 산119, 산120, 산120-3, 산120-6, 산122, 산122-2, 산125, 산125-1, 산125-2, 산125-7 ~ 산125-9, 산125-14 ~ 산125-16, 산127, 산127-7, 산129-3, 산132-1, 산132-7, 산135, 산135-3, 산136, 산136-1, 산136-2, 산138-1 ~ 산138-3, 산139-1 ~ 산139-3, 산139-4, 산140, 산141, 산141-1, 산142 ~ 산145, 산145-1, 산145-3 ~ 산145-14, 산147-1 ~ 산147-3, 산147-5, 산147-7, 산147-8, 산147-11, 산149, 산149-1, 산149-2, 산150, 산150-2, 산151-1, 산151-3, 산154-1 ~ 산154-5, 산176, 산177, 산177-1, 산177-7 ~ 산177-9,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원당동	**원당동** 567, 567-1, 567-3, 568-3, 568-4, 568-6, 569, 572-8, 573-8, 579-2, 579-3, 599, 599-2, 599-3, 600, 600-1, 600-2, 600-3, 601, 602-1 ~ 602-4, 603-1 ~ 603-7, 604, 612, 612-1, 613, 613-1, 613-2 ~ 613-7, 614, 615, 616, 616-2, 617-1 ~ 617-3, 625-1, 626-1, 626-2, 626-3, 626-5~ 626-7, 627-1 ~ 627-6, 628, 629-1, 629-2, 630~ 633, 631-1 ~ 631-4, 634-1 ~ 634-6, 635-1, 635-2, 636-1 ~ 636-6, 636-9 ~ 636-16, 637-1, 637-3 ~ 637-5, 639, 640-2, 640-5 ~ 640-13, 640-16 ~ 640-29, 641-1, 641-2, 641-5, 641-6, 643-1, 643-8 ~ 643-12, 644, 645, 645-2 ~ 645-8, 648, 648-1, 648-3, 648-4, 649, 650, 651-1, 651-3 ~ 651-37, 652 ~ 654, 654-1, 655, 655-2, 655-3, 656, 656-2 ~ 656-4, 656-6 ~ 656-10, 656-12 ~ 656-15, 656-24 ~ 656-30, 656-32 ~ 656-38, 683-1 ~ 683-4, 735, 736, 736-1~736-4, 737-1, 778-1, 778-4, 778-5, 778-7 ~ 778-10, 782, 782-1, 782-2, 782-4, 782-5, 783, 784, 784-1, 784-2, 790, 793, 795-1 ~ 795-7, 796-1 ~ 796-19, 797-1 ~ 797-13, 798-1 ~ 798-9, 799-1 ~ 799-6, 800-1 ~ 800-10, 801, 802-1~ 802-8, 803-1 ~ 803-13, 804-1 ~ 804-5, 805-1 ~ 805-6, 806-1 ~ 806-7, 807-1 ~ 807-5, 808-1 ~ 808-15, 809, 810-1 ~ 810-14, 811-1 ~ 811-12, 812-1 ~ 812-10, 812-13, 813-1, 813-2, 814-1 ~ 814-12, 815-1 ~ 815-10, 816, 816-1 ~ 816-10, 817-1, 817-5 ~ 817-11, 818-1 ~ 818-6, 819-1, 819-2, 820-1 ~ 820-11, 821-1 ~ 821-14, 822-1 ~ 822-15, 823-1 ~ 823-6, 824-1 ~ 824-14, 825-1 ~ 825-16, 826-1 ~ 826-3, 827-1 ~ 827-9, 828-1 ~ 828-8, 829-1 ~ 829-10,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원당동	**원당동** 830-1 ~ 830-3, 831-1 ~ 831-13, 832-1 ~ 832-11, 833-1 ~ 833-14, 834-1 ~ 834-7, 835-1 ~ 835-10, 836-1 ~ 836-5, 837-1 ~ 837-12, 838-1 ~ 838-14, 839-1 ~ 839-3, 840-1 ~ 840-6, 840-8 ~ 840-11, 841-1 ~ 841-7, 842, 842-1 ~ 842-5, 843-1 ~ 843-6, 844, 844-1 ~ 844-5, 845-1 ~ 845-9, 846-1 ~ 846-6, 847-1 ~ 847-10, 848-1 ~ 848-7, 848-9, 849, 849-1, 850-1, 850-2, 851-1 ~ 851-6, 852-1~ 852-3, 853-1 ~ 853-8, 854-1, 854-2, 854-3 ~ 854-7, 854-9 ~ 854-16, 855-1 ~ 855-7, 856, 856-1 ~ 856-4, 857, 857-1 ~ 857-3, 858 ~ 901, 887-1, 887-2, 산33, 산40-4, 산89-4, 산90, 산95-1,산95-6, 산95-7, 산98-2, 산98-7, 산102-4, 산102-5, 산103-1~ 산103-3, 산104 ~ 산106, 산106-1, 산106-2, 산107-1, 산107-2, 산108-1, 산109-1, 산109-2, 산110-1, 산111-1 ~ 산111-3, 산111-5 ~ 산111-8, 산111-10 ~ 산111-24, 산111-30~산111-35, 산111-38, 산111-39, 산111-42, 산113, 산113-3, 산114, 산114-3, 산116, 산117-1~ 산117-4, 산118, 산118-2, 산124, 산125-1, 산125-2, 산125-5, 산125-6, 산126-2, 산126-3, 산135, 산13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1	아라동	기존 원당동(행정동) 내 검단신도시 1단계 구역 **당하동** 145 ~ 153, 158 ~ 165, 184 ~ 191, 197 ~ 206, 212, 213, 234, 237 ~ 247, 251, 253, 256, 257, 266, 268 ~ 277, 279 ~ 282, 284, 285, 287, 291, 293, 298 ~ 303, 305, 309 ~ 311, 313 ~315, 319 ~ 321, 323, 329, 332, 333, 337~ 344, 346, 347, 349 ~ 351, 354, 359, 360, 362, 364, 366, 368~ 370, 372, 374, 380, 381, 390, 391, 401, 402, 412 ~ 420, 426~ 433, 436 ~ 438, 441 ~ 443, 445, 446, 449, 460, 462, 463, 465, 479, 488 ~ 490, 495, 497 ~ 499, 501, 502, 504, 505, 509, 515, 516, 523, 527, 528, 533, 534, 537, 538, 539, 540, 542, 544, 546 ~ 548, 550 ~ 557, 561 ~ 565, 569, 572, 573, 575 ~ 578, 583, 586 ~ 589, 596 ~ 601, 605, 606, 617~ 619, 637, 638, 641, 642, 645, 966~ 971, 974 ~ 981, 986, 991, 1057, 145-1 ~ 145-3, 146-1, 146-2, 147-1 ~ 147-3, 148-1,148-2, 150-1 ~150-4, 150-6, 151-1, 151-2, 152-1, 152-2, 153-1, 158-1, 158-2, 159-1, 159-2, 160-1, 160-2, 161-1, 161-2, 162-1 ~ 162-6, 163-1 ~ 163-3, 164-1 ~ 164-5, 165-1~ 165-4, 174-1, 175-1 ~ 175-5, 176-1, 176-2 184-1, 185-1 ~185-5, 186-1 ~ 186-6, 187-1, 187-2, 188-1, 187-1, 187-2, 188-1, 188-3 ~188-22, 189-1, 189-2, 190-1, 190-2, 191-1, 194-1, 195-2, 195-3, 196-1, 197-1~ 197-3, 198-1, 198-2, 199-1, 199-2, 200-1, 201-1, 202-1, 203-1, 204-1, 204-2, 205-1, 206-1 ~ 206-4, 208-4, 209-1, 211-1, 211-2, 212-1 ~ 212-3, 213-1 ~ 213-4, 214-1 ~214-3, 214-5, 214-6, 215-1 ~ 215-3, 215-5, 215-6, 215-7, 216-2, 216-3, 230-3, 233-1~ 233-3, 235-1 ~ 235-3, 235-7, 237-7, 241-1, 248-1, 248-3, 249-1,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당하동 249-3, 250-1 ~ 250-3, 251-1 ~ 251-4, 252-1 ~ 252-3, 253-1, 255-2, 258-1, 258-2, 259-1, 259-10, 259-11, 259-13, 259-15 ~ 259-19, 259-2~ 259-9, 261-1, 261-2, 261-4, 262-1~ 262-3, 263-1, 263-2, 263-4, 264-1~ 264-7, 265-1, 265-10, 265-2, 265-3, 265-5, 265-7 ~ 265-9, 267-1, 267-3~ 267-5, 270-1, 271-1, 276-1 ~ 276-4, 277-1 ~ 277-5, 279-1 ~ 279-7, 280-1~ 280-3, 280-5, 280-6, 280-8 ~ 280-12, 281-1 ~ 281-5, 281-7 ~ 281-15, 282-1, 282-2, 284-1, 285-1 ~ 285-3, 285-5 ~ 285-7, 291-1 ~ 291-5, 293-1 ~ 293-6, 296-5, 297-1, 297-3, 297-4, 300-1, 300-2, 304-1, 304-2, 307-1, 308-1, 309-1 ~ 309-3, 310-1 ~ 310-3, 310-5, 313-1 ~ 313-5, 314-1, 314-2, 314-4, 314-5, 314-7 ~ 314-14, 315-1, 315-4, 315-5, 315-7, 315-8, 319-1, 319-3 ~ 319-9, 320-1~ 320-5, 321-1, 322-1, 322-3 ~ 322-6, 323-1 ~ 323-3, 329-1 ~ 329-6, 332-1, 332-2, 337-1 ~ 337-5, 338-1, 339-1, 339-2, 340-1 ~ 340-5, 341-1 ~ 341-5, 341-7 ~ 341-10, 342-1, 343-1, 343-2, 344-1, 344-2, 346-1, 348-1, 348-2, 350-1 ~ 350-9, 351-1 ~ 351-5, 352-1 ~ 352-4, 353-3, 353-4, 354-1, 355-4, 356-2, 357-13, 357-23, 357-27, 357-29,357-30, 357-36, 357-38, 357-41, 360-2, 361-2, 362-1, 362-2, 365-1, 366-1, 366-2, 369-1, 370-1, 371-1, 371-2 ~ 371-9, 373-1, 373-2, 376-1, 379-1, 381-2, 382-1, 383-1~ 383-3, 388-1, 388-3, 390-1 ~ 390-3, 394-1 ~ 394-3, 395-1, 397-2, 397-4, 401-1 ~ 401-15, 402-1 ~402-3, 405-1, 405-2, 407-6, 407-7, 408-2, 409-2, 409-5, 410-7, 412-1, 412-2, 413-1 ~ 413-4, 414-1 ~ 414-3, 415-1 ~ 415-6, 416-1, 416-2, 417-1 ~ 417-4, 418-1 ~ 418-3, 419-1 ~ 419-5, 420-1 ~ 420-5, 421-6, 422-1, 424-4 ~424-7, 426-1 ~ 426-6, 427-1 ~ 427-4, 428-1 ~ 428-3, 429-1 ~ 429-3, 430-1 ~ 430-4, 431-1 ~ 431-3, 433-1, 433-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당하동 434-1, 434-2, 435-1, 435-2, 436-1, 436-2, 437-1, 437-2, 439-1, 439-2, 440-1, 442-1, 442-2, 444-1, 445-3, 445-4, 447-1, 447-2, 448-1 ~ 448-10, 449-2 ~ 449-6, 450-1, 450-2, 451-1, 451-2, 451-5, 451-8 ~ 451-11, 457-5, 459-2, 460-2 ~ 460-11, 461-1 ~ 461-3, 462-1, 462-5, 463-1 ~ 463-4, 464-2 ~ 464-5, 465-1, 466-1, 466-3, 467-2, 468-2, 469-1, 469-2, 470-2, 470-5, 471-2 ~ 471-4, 472-1 ~ 472-3, 473-1 ~ 473-3, 474-1 ~ 474-4, 474-6, 475-1 ~475-4, 475-7, 476-1, 476-2, 476-4, 476-5, 477-1 ~ 477-6, 477-8, 477-11, 477-17, 478-1, 478-2, 480-1~ 480-4, 481-1, 481-3, 481-4, 482-2 ~ 482-5, 483-1, 485-2, 485-6, 486-1, 486-3 ~ 486-5, 487-1 ~ 487-5, 490-1~ 490-3, 495-1, 495-4, 496-2, 496-3, 497-1 ~ 497-3, 498-2, 498-3, 500-1~ 500-6, 500-8 ~ 500-10, 501-1, 502-1, 503-1 ~ 503-3, 503-5 ~ 503-9, 506-1 ~ 506-5, 507-1 ~ 507-3, 508-1 ~ 508-3, 508-5 ~ 508-9, 510-1, 510-3, 510-4, 511-1, 511-2, 511-4, 512-1, 512-2, 514-4, 513-1, 513-4, 514-1, 516-1, 516-2, 518-1, 518-4, 519-1, 519-2, 519-4 ~ 519-6, 520-1, 520-2, 521-1, 522-1 ~ 522-3, 523-1 ~ 523-4, 524-1, 524-3, 524-4, 524-5, 524-7, 525-1, 525-2, 525-5 ~ 525-7, 526-1 ~ 526-18, 528-1 ~ 528-7, 529-1 ~529-4, 530-1, 530-2, 531-1 ~ 531-9, 532-1 ~ 532-10, 535-1 ~ 535-5, 536-1, 536-2, 537-1 ~ 537-5, 540-1 ~ 540-3, 541-1 ~541-3, 543-1, 543-3, 543-5, 544-1, 548-1, 549-1 ~ 549-5, 553-1, 554-1, 554-2, 558-1, 558-2, 559-1 ~ 559-4, 560-1 ~ 560-5, 564-1, 566-1 ~ 566-4, 567-1 ~ 567-3, 568-1, 568-2, 568-4 ~ 568-7, 568-11 ~ 568-13, 569-1, 569-2, 570-1, 570-2, 571-1 ~ 571-5, 572-1 ~ 572-6, 574-1 ~ 574-5, 574-7, 574-8, 574-10, 574-11, 575-1, 576-1, 576-2 577-1 ~ 577-3, 578-1, 579-1, 579-2, 580-1, 580-2, 581-1 ~ 581-3, 582-1, 582-4 ~ 582-6, 582-10, 582-14, 582-1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당하동** 583-3,584-2, 585-2, 590-1, 590-2, 590-4, 590-5, 591-1, 591-2, 592-1, 592-3, 592-4, 592-6, 592-11 ~ 592-13, 592-15, 593-4, 593-5, 594-1, 594-2, 599-1, 603-3, 603-5, 607-1, 607-2, 633-2 ~ 633-4, 635-1, 636-1, 636-2, 639-1, 639-2, 640-1, 640-2, 645-1, 646-1 ~ 646-4, 661-1, 661-3, 661-4, 664-14, 664-15, 661-17, 661-18, 661-20, 661-21, 964-7, 964-9, 964-19 ~ 964-24, 965-1, 965-3, 965-4, 971-1 ~ 972-4, 983-3, 산11-1, 산112-1, 산113-3, 산114-1, 산115-1, 산116-1, 산117-4, 산12-1, 산12-2, 산14-1, 산14-2, 산15-1 ~ 산15-5, 산16 ~ 산18, 산2, 산20-1 ~ 산20-3, 산21-1 ~ 산21-3, 산24-1, 산24-2, 산25-1 ~ 산25-5, 산26-1~ 산26-3, 산26-5, 산27 ~ 산29, 산3. 산30-1, 산31, 산32, 산35-1 ~ 산35-3, 산36-1 ~ 산36-9, 산38-1 ~ 산38-3, 산39-1 ~ 산39-3, 산4, 산40, 산41-1, 산41-2, 산42-1, 산42-2, 산43 ~ 산45, 산45-1, 산46 ~ 산48, 산50. 산51-1, 산57-1 ~ 산57-3, 산58, 산59, 산60-1 ~ 산60-3, 산6-1, 산6-2, 산6-5, 산71, 산7-1, 산7-2, 산8-2, **원당동** 2, 3, 5, 6, 8, 10 ~ 12, 15 ~ 17, 23 ~ 26, 29 ~ 32, 37, 39 ~ 41, 43 ~ 46, 51 ~ 54, 57, 62 ~ 71, 73, 79, 85, 87, 89, 94, 95, 97, 100, 102 ~ 105, 111, 113, 115 ~ 129, 132, 134, 137, 140 ~ 148, 150 ~ 160, 162 ~ 176, 178, 179, 181, 184, 185, 187 ~ 190, 193 ~ 195, 197, 201, 204, 207, 212, 214, 220 ~ 222, 226, 228, 229, 241, 242, 244, 245, 246, 249, 250, 252, 255 ~ 259, 261, 262, 264 ~ 266, 268 ~ 270, 272 ~ 275, 280 ~ 284, 286, 287, 300, 301, 304, 307 ~ 310, 313 ~ 316. 318 ~ 339, 341 ~ 345, 347 ~ 354, 355, 356, 358 ~ 361, 363, 365 ~ 371, 376, 387, 390 ~ 397, 408, 409, 412, 414, 416, 417, 419, 424 ~ 426, 431, 432, 434, 43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원당동** 438, 441 ~ 451, 453, 457, 461 ~ 464, 466, 468 ~ 470, 473 ~ 483, 485, 486, 488, 489, 492, 500, 502, 508, 509, 512, 513, 516 ~ 518, 520 ~ 527, 530 ~ 533, 536, 538, 539, 541, 544, 549, 550, 552 ~ 555, 744, 750, 751, 755 ~ 760, 763~ 774, 792, 10-1 ~ 10-4, 104-1, 10-5. 105-1, 105-2, 10-6, 106-1, 10-7, 107-1, 107-2, 108-1, 108-2, 108-4, 108-6, 108-7, 11-1, 111-1 ~ 111-3, 11-2, 112-1, 112-2, 112-4 ~ 112-6, 11-3, 113-1, 113-2, 11-4, 114-1 ~ 114-3, 11-5, 116-1, 117-1, 118-1, 120-1, 12-1 ~ 12-5, 122-1, 122-2, 123-1 ~ 123-3, 124-1 ~124-7, 125-1, 126-1 ~ 126-3, 130-1, 130-2, 131-1 ~ 131-4, 132-1, 134-1, 137-1 ~137-6, 139-1, 139-3, 139-4, 140-1, 140-2, 141-1, 142-1, 143-1, 145-1, 146-1,148-1 ~ 148-4, 15-1, 15-3 ~ 15-6, 158-1, 158-2, 16-1 ~ 16-8, 161-1 ~161-4, 17-1 ~ 17-6, 18-5 ~ 18-8, 19-2, 20-1, 20-3, 20-4, 20-6, 2-1 ~ 2-11, 162-1, 164-1 ~ 164-4, 169-1, 170-1 ~ 170-2, 173-1, 173-2, 174-1,176-1 ~ 176-3, 178-1, 178-2, 181-1 ~181-7, 186-1 ~ 186-3, 188-1, 190-1, 191-1 ~ 191-5, 192-1, 192-2, 196-1 ~ 196-6, 197-1 ~ 197-4, 198-1, 198-2, 199-1, 199-2, 200-1 ~ 200-11, 202-2, 202-3, 203-1, 204-1, 204-3 ~ 204-5, 205-1 ~ 205-3, 206-5, 206-6, 207-1 ~ 207-3, 208-3, 210-2, 21-1 ~ 21-5, 211-1 ~ 211-5, 211-7, 211-10, 211-11, 212-1, 213-1 ~ 213-5, 215-1 ~ 215-4, 216-1, 216-2, 217-1 ~ 217-6, 218-1 ~ 218-5, 219-1 ~ 219-6, 22-2, 23-1 ~ 23-3, 24-1 ~ 24-3, 25-1 ~ 25-3, 26-1 ~ 26-5, 26-7~ 26-9, 27-1, 27-2, 28-1, 28-2, 30-1 ~ 30-5, 3-1 ~ 3-3, 222-1~ 222-13, 223-1, 223-2, 224-3 ~224-5, 225-1 ~ 225-5, 227-1, 227-2, 230-4, 230-5, 241-1, 241-3 ~ 241-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원당동 230-4, 230-5, 241-1, 241-3 ~ 241-5, 242-1 ~ 242-3, 244-1 ~ 244-3. 245-1 ~ 245-4, 246-1, 249-1, 250-1, 251-1, 251-2, 257-1, 258-1, 261-1, 262-1 ~ 262-4, 267-1, 268-1, 269-1, 269-2, 270-1, 270-3, 271-3, 273-1, 276-1 ~ 276-3, 276-5 ~ 276-8, 277-1, 278-1, 278-2, 278-5, 280-1, 280-2, 281-1, 282-1, 282-2, 283-1, 283-2, 284-1, 284-2, 285-1 ~ 285-5, 286-1, 287-1, 287-2, 288-1 ~ 288-6, 288-8 ~ 288-10, 288-12, 288-13, 288-17, 288-19, 288-20, 288-22 ~ 288-24, 290-2 ~ 290-5, 291-2, 291-4, 291-5, 292-2 ~ 292-5, 294-2, 294-3, 294-7, 296-1, 296-2, 297-2 ~ 297-5, 298-1, 298-3, 300-1 ~ 300-4, 301-1, 304-1, 307-1, 307-2, 308-1, 309-1, 310-1, 310-2, 31-1, 313-1, 313-2, 315-1, 315-2, 316-1, 318-1, 319-1, 320-1, 320-2, 32-1, 32-2, 33-1, 33-2, 34-1, 34-3 ~ 34-7, 34-9 ~ 34-11, 321-1, 322-2, 324-1, 324-2, 325-1, 326-1, 326-2, 327-1, 328-1, 329-1, 329-2, 329-3, 329-6, 330-1 ~ 330-6, 331-1 ~ 331-3. 332-1, 333-1 ~ 333-3, 334-1, 335-1 ~ 335-4, 336-1 ~ 336-3, 337-1 ~ 337-8, 338-1 ~ 338-3, 339-1 ~ 339-8, 341-1, 342-1, 343-1 ~ 343-3, 344-1 ~ 344-3, 345-1 ~ 345-3, 347-1 ~ 347-3, 348-1 ~ 348-4, 349-1. 350-1, 350-2, 351-1, 351-2, 354-1, 355-1, 355-2, 356-1 ~ 356-4, 358-1 ~ 358-3, 359-1, 360-1, 360-2, 36-2 ~ 36-6, 37-1. 37-2, 37-4 ~ 37-9, 38-2, 38-3, 39-1, 43-1 ~ 43-14, 47-1 ~ 47-3, 51-1 ~ 51-3, 54-1, 54-2, 55-1, 56-1, 57-1, 57-2, 58-1 ~ 58-3, 59-1 ~ 59-3, 59-6 ~ 59-10, 60-2 ~ 60-6, 61-2, 61-3, 62-1 ~ 62-13, 63-1 ~ 63-10, 65-1, 65-2, 66-1, 69-1, 71-1 ~ 71-4, 73, 73-1, 73-2, 79-1 ~ 79-3, 81-1 ~ 81-3, 83-2, 83-5, 83-6, 83-8 ~ 83-11, 84-1, 84-3, 86-1, 86-3, 86-4, 86-5, 86-7, 86-9 ~ 86-11, 86-14, 86-1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원당동** 86-17, 87-1, 90-1 ~ 90-3, 91-1 ~ 91-7, 92-1 ~ 92-11, 93-1 ~ 93-7, 95-1, 95-2, 96-1, 96-2, 98-1, 98-2, 98-3, 99-1, 361-1, 363-1 ~ 363-4, 365-1, 365-3 ~ 365-9, 366-2, 367-2, 367-4, 367-6 ~ 367-9, 368-1, 368-5, 369-1, 370-1, 372-2, 373-2, 375-1, 375-3, 375-4, 375-8, 375-10, 377-1, 377-2, 377-5 ~ 377-7, 377-10, 377-13, 377-14, 377-16, 378-1 ~ 378-7, 379-4, 387-1, 387-2, 390-1, 390-2, 391-1, 392-1, 393-1 ~ 393-4, 394-1, 394-2, 394-4 ~ 394-7, 395-1 ~ 395-5, 396-1 ~ 396-10, 397-1 ~ 397-3, 399-1, 400-5, 400-6, 401-2, 402-3, 405-1, 405-4, 406-2, 407-3, 407-6, 408-1, 408-2, 409-1, 412-1, 412-2, 413-2, 414-1, 414-2, 419-1, 424-1 ~ 424-3, 425-1, 426-1, 434-1 ~ 434-3, 434-5 ~ 434-7, 434-9, 434-11, 435-1 ~ 435-3, 435-5 ~ 435-7, 436-1 ~ 436-3, 436-5, 436-6, 437-1 ~ 437-6, 437-8, 439-1 ~ 439-4, 439-6, 439-7, 440-1 ~ 440-8, 441-1 ~ 441-5, 442-7 ~ 442-9, 443-1, 444-1, 445-1 ~ 445-3, 446-1, 447-1 ~ 447-5, 448-1 ~ 448-38, 449-1 ~ 449-3, 451-1 ~ 451-7, 449-1, 453-1 ~ 453-5, 457-1, 457-2, 461-1, 461-2, 462-1 ~ 462-9, 463-1 ~ 463-5, 464-1, 464-2, 464-4, 466-1 ~ 466-6, 468-1 ~ 468-3, 469-1, 469-3, 469-4, 470-1 ~ 470-3, 473-1, 475-1, 475-2, 476-1, 476-2, 477-1 ~ 477-3, 479-1 ~ 479-3, 480-1 ~ 480-4, 480-6 ~ 480-10, 480-13, 480-14, 480-16 ~ 480-19, 480-21 ~ 480-23, 481-2 ~ 481-9, 482-1 ~ 482-5, 483-1 ~ 483-13, 485-1 ~ 485-11, 486-1 ~ 486-27, 487-1 ~ 487-4, 487-6, 487-8 ~ 487-13, 489-3, 490-1 ~ 490-3, 491-1 ~ 491-3, 493-1 ~ 493-5, 494-1 ~ 494-3, 495-1 ~ 495-4, 496-1, 496-2, 497-1, 497-2, 498-1, 498-2, 499-1 ~ 499-6, 501-1, 501-2, 503-1, 503-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원당동** 503-4, 504-2 ~ 504-4, 505-5, 507-3, 507-5, 508-1 ~ 508-3, 509-1 ~ 509-9, 5-1 ~ 5-10, 5-13 ~ 5-16, 6-1 ~ 6-3, 8-1, 510-1, 510-2, 511-1, 511-2, 513-1, 514-1, 514-2, 515-1, 515-2, 518-1, 518-2, 519-1 ~ 519-4, 524-1, 528-1, 528-3 ~ 528-8, 529-1 ~ 529-4, 529-6, 529-11 ~ 529-14, 531-1 ~ 531-5, 531-7, 532-1, 534-1 ~ 534-5, 535-1 ~ 535-4, 537-1, 537-2, 538-1, 539-2 ~ 539-30, 541-2 ~ 541-4, 544-1 ~ 544-14, 546-1, 546-3, 547-1, 547-3 ~ 547-7, 548-2 ~ 548-4, 549-1, 549-2, 550-1, 550-2, 550-7, 550-8, 551-1 ~ 551-11, 553-1, 553-2, 555-3, 555-4, 556-1, 557-1 ~ 557-6, 557-9 ~ 557-11, 559-4, 559-5, 559-9, 559-10 ~ 559-12, 559-14, 559-15, 573-6, 573-8, 579-2, 579-3, 743-3, 743-9, 743-10, 743-12, 743-13, 744-1, 745-3, 745-8 ~ 745-13, 746-1, 746-3, 746-4, 750-2, 753-1, 755-5 ~ 755-7, 756-1, 756-3, 756-4, 757-1, 762-1, 762-2, 763-2, 763-4, 771-2 ~ 771-4, 산2, 산3, 산7 ~ 산15, 산17, 산21, 산25, 산27, 산29, 산32 ~ 산34, 산36, 산39, 산42, 산43, 산45, 산47 ~ 산49, 산51 ~ 산57, 산66, 산67, 산69, 산71, 산74, 산76, 산81, 산83, 산85, 산87, 산90, 산91, 산94, 산1-1, 산1-2, 산13-1, 산13-2, 산137 ~ 산142, 산16-1, 산16-2, 산18-1, 산18-3 ~ 산18-8, 산19-2 ~ 산19-4, 산20-2, 산20-3, 산21-1 ~ 산21-4, 산22-1, 산22-2, 산22-4, 산24-2, 산26-4, 산28-1, 산38-2, 산40-1 ~ 산40-5, 산41-1, 산41-2, 산42-2, 산46-1, 산46-2, 산47-1 ~ 산47-5, 산49-1, 산50-1, 산50-2, 산5-1, 산51-3, 산52-1, 산58-2, 산60-2, 산60-3, 산6-1 ~ 산6-10, 산61-2 ~ 산61-4, 산61-6, 산61-7, 산61-10, 산62-2, 산63-2 ~ 산63-4, 산63-6, 산63-7, 산63-9, 산63-10, 산63-11, 산63-13,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원당동** 산64-2 ~ 산64-4, 산65-2, 산65-6, 산66-8, 산68-1, 산68-2, 산68-4 ~ 산68-22, 산7-1, 산7-2, 산71-1 ~ 산71-4, 산72-1, 산72-2, 산72-5 ~ 산72-8, 산73-1 ~ 산73-3, 산74-1, 산74-2, 산75-1 ~ 산75-9, 산75-11, 산76-1, 산77-1, 산77-4, 산78-1 ~ 산78-8, 산79-1, 산80-1, 산80-2, 산82-1, 산82-4 ~ 산82-10, 산83-2, 산83-6, 산83-8, 산83-9, 산86-4, 산86-6 ~ 산86-9, 산86-12 ~ 산86-14, 산89-4, 산91-3, 산92-3, 산93-1, 산9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68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마전동란 다음에 아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3(원당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서 구 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 희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청라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 단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 당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 하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 전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아 라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3(원당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

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

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적용례) 제6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9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사업소용”을 “그 사업소용”으로, “관할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 및

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향상을”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신변 및 안전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제9조제2항 중 “실무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원 중 3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를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 ·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390	842	20	120	45	363	(9)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385	837	20	120	45	363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8	6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4	4					
5급 소계	73	39	2	8	1	23	
행 정	10	8	2				
의 무	4			4			
행정 · 사회복지	5	5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2	12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2					2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1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4					4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4					4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2					2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4					4	
행정 · 사회복지 · 방송통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2					2	

1 페이지

행정 · 공업 · 환경	1	1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농업 · 수의	1	1					
행정 · 녹지 · 시설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행정 · 환경 · 시설	2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 시설	1	1					
행정 · 녹지 · 환경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2			2			
6급 소계	315	220	8	21	13	53	
행정	90	74	4	1	1	10	
세무	18	16			2		
전산	1	1					
사회복지	18	18					
속기	2		2				
공업	8	7			1		
농업	1	1					
녹지	6	5			1		
수의	1	1					
보건	5	5					
의료기술	1			1			
간호	1			1			
환경	6	6					
시설	26	24			2		
방송통신	1	1					

2 페이지

운 전	6	3	1		1	1	
전 화 상 담 운 영	1	1					
사 무 운 영	2	1			1		
행 정 · 세 무	13	9			1	3	
행 정 · 사 회 복 지	39	9	1			29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녹 지	2	1				1	
행 정 · 보 건	5	2			1	2	
행 정 · 간 호	1					1	
행 정 · 환 경	7	5				2	
행 정 · 시 설	13	13					
행 정 · 방 송 통 신	4	3				1	
사 회 복 지 · 간 호	1			1			
공 업 · 보 건	1	1					
공 업 · 환 경	1	1					
녹 지 · 시 설	1	1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환 경	1	1					
식 품 위 생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환 경 · 시 설	1	1					
시 설 · 방 재 안 전	1	1					
행 정 · 세 무 · 공 업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1					1	
행 정 · 세 무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2	2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2			2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3 페이지

행정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9			9			
식품위생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녹지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 간호	1			1			
7급 소계	401	252	4	34	14	97	(1)
행정	146	87	4		2	53	(1)
세무	20	18			2		
전산	6	6					
사회복지	61	31				30	
공업	9	8			1		
농업	2	1			1		
녹지	8	7			1		
수의	3	3					
해양수산	1	1					
보건	17	11		5	1		
의료기술	4			4			
간호	17			17			
환경	12	12					
시설	54	49			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운전	11	1		1		9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1				3	
행정 · 세무	3	2			1		
행정 · 사회복지	4	2				2	
행정 · 환경	1	1					
행정 · 시설	4	4					
농업 · 수의	1	1					

4 페이지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8급 소계	383	207	4	47	12	113	(5)
행정	139	73	3	2		61	(5)
세무	9	8			1		
전산	2	2					
사회복지	68	24		2		42	
공업	14	14					
농업	1	1					
녹지	7	6			1		
보건	8	4		1	3		
의료기술	1			1			
간호	31			31			
환경	17	17					
시설	40	35			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운전	11		1	1		9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5	5					
공업·보건	1	1					

5 페이지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2	2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204	112	1	9	5	77	(3)
행정	84	38	1	2	2	41	(3)
세무	14	13			1		
사회복지	41	6		1		34	
공업	6	6					
농업	1	1					
녹지	5	3			2		
보건	3	1		2			
의료기술	2			2			
환경	9	9					
시설	20	20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2	1		1			
연구직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계	3	3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8급 상당소계	2	2					
비서	2	2					
9급 상당 소계							
비서							

6 페이지
7 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기획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 중 “공동체협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세무1과장”을 “공동체협치과장,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생태하천과장”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태하천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의3 전단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을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교통정책과장”을 “식품산업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시기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역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의료지방기술사무관으로, 치매돌봄과장”을 “치매정신돌봄과장”으로, “치매돌봄과장은 부센터장을 겸한다”를 “치매정신돌봄과장은 부센터장을 겸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지역보건과, 치매돌봄과”을 “치매정신돌봄과”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청라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을 “청라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으로,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며”를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아라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을 “실장·국장·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

실”을 “감사담당관”으로, 제15조제1항 중 “감사실장” 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2호 및 5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과장”으로 하고, “실·과 단위”를 “담당관·단·과 단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단·과”로,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실·과장”을 “소관 담당관·단·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실·과·담당중에서”를 “담당관·단·과·담당중에서”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담단관·단·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 단·실·관·과·소·동”을 “담당관·단·과·소·동”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기획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실·과·소·동장“을 ”담당관·단·과·소·동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를 “담당관·단·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실·과”를 각각 “담당관·단·과”로,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단장·과장”으로,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본문,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중 “실·과”

를 각각 “담당관·단·과”로 한다.

별지 제1호규격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출자 란의 “실·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입법예고 결과 란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홍 보 정 책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담 당 관	2.	국·시·구정시책의 홍보
	3.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4.	고시·공고·공보 발간에 관한 업무
	5.	구보(구정신문) 발간·배부
	6.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7.	행정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행정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운영(전산장비, PC, S/W)
	9.	구본청 및 산하기관 정보보안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10.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
	11.	유·무선 네트워크 운영 관리
	12.	정보화교육(직원 및 주민) 실시
	13.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
	14.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15.	기타 정보·IT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17.	지역정보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18.	사랑의 PC 무상보급 및 무상수리
	19.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점검
	20.	정보기술아키텍쳐(EA) 도입 및 운영
	2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추진
	2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
	23.	스마트워크 추진 및 원격근무 IT서비스 지원(클라우드, GVPN 등)
	24.	u-City 사업 추진
	25.	정책사진 관리

1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건강보험 업무
	4.	방위협의회 운영
	5.	직장복지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
	6.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7.	행정공제회 관리
	8.	청사경비 및 방호관리
	9.	직장민방위 및 자체예비군 운영 관리
	10.	의식행사 의전 및 접대에 관한 사항
	11.	민간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2.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3.	회의실 운영 관리
	14.	구기등에 관한 사무
	15.	공무원 복무 및 휴가
	16.	직원월례조회 및 시무식·종무식
	17.	청내 사무실 조정
	18.	공무원 인사(구소속공무원 임용권)
	19.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20.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
	21.	공무원 신원조사 의뢰
	22.	공무원증 발급
	23.	소·동 행정지도 감독
	24.	동의 명칭, 위치, 구역의 변경(행정구역 조정)
	25.	시책업무 추진
	26.	공무원 교육
	27.	공무직근로자 관리
	28.	반상회 운영

1페이지

	29.	통 · 반조직 운영
	30.	여론 및 동향관리
	31.	공무원 표창
	32.	공무원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33.	적십자회비 모금
	34.	단체관리(바르게살기운동)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무
	36.	공무원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37.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8.	인구통계(내국인/외국인) 작성 및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권한 관리
	39.	행정사 사무 업무
	40.	선거 및 국민투표
	41.	사무편람 제작 및 지도 · 점검
	42.	사회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 조정
	43.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관리
	44.	새마을 정신계도 홍보 및 교육
	45.	새마을 장학금 운영
	46.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47.	새마을 시설물 관리 · 지도
	48.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49.	국민운동 관련 시책 추진
	50.	민간단체보조에 따른 보조금 관리
	51.	해병전우회 관한 사항
	52.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53.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54.	공무직 노조 지원업무
	55.	그 밖의 타 실 ·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56.	공무원 호봉 및 근무년수 관리
	57.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58.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59.	동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60.	동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61.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2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민원봉사과	1.	민원상담
	2.	공인신조 및 폐기
	3.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사용 승인
	4.	공인관리실태 지도점검
	5.	기록관(문서고) 운영
	6.	기록관운영에 따른 자료관리(생성, 열람)
	7.	민원서류(인허가, 진정, 즉결) 접수 및 수수료 정산
	8.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9.	대외전자문서 배부
	10.	전화민원 및 우편민원 접수
	11.	인터넷민원(구정에 바란다) 접수 및 배부
	12.	관인날인
	13.	문서사송
	14.	우편물 접수 및 발송
	15.	기록물 전산화 관련 업무
	16.	민원행정 개선
	17.	공무원 친절교육 등 관련 업무
	18.	여권 접수, 교부 및 심사
	19.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
	20.	민권관련 제도 운영
	21.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2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
	23.	정보공개제도 운영
	24.	어디서나민원관련 업무처리 및 수수료 정산
	25.	민원24 민원접수처리 및 수수료 정산
	26.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관리
	27.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수수료 정산

1 페이지

	28.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재외국민 포함)
		나. 인감증명 발급
		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발급
		라. 호적(제적) 등·초본 발급
		마.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사.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자.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
		차.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카. 건축물대장 발급
		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정산
		파. 전입세대 열람
	29.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발급
	30.	국내거소자 거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발급
	3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32.	호적(제적)원부 관리
	33.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수리
	3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
	35.	기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6.	인구동태
	37.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
	38.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 수형인명표 관리
	39.	기록물관리실태 지도점검
	40.	기록물 평가 및 폐기
	41.	기록물 정리 및 이관
	42.	비밀문서 관리

2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아 동 행 복 과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생활가정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가정위탁아동 책정 및 지원
	4.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 지원
	5.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입양아동 등록 및 지원
	1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11.	요보호아동 시설 입소 의뢰
	12.	아동수당 업무추진
	13.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14.	아동지킴이 운영
	15.	위기아동발굴
	1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36.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37.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38.	드림스타트 대상자 관리
	39.	드림스타트 복지 세부 프로그램 운영
	40.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4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42.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43.	아이 돌봄사업 총괄관리
	44.	아동학대 현장조사

1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 경 관 리 과	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수리
	2.	무허가배출업소 지도단속
	3.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4.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5.	각종 중규모사업의 환경성 검토
	6.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7.	환경기술인 교육
	8.	환경보전 대구민 홍보
	9.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11.	환경관리 민원처리
	12.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조사
	13.	토양오염 실태조사
	14.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15.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16.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17.	하천오염행위 단속
	18.	환경 사회복무요원관리
	19.	환경관련 오염도검사자료 관리
	20.	환경관련 진정민원 처리
	21.	대기·수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22.	환경재난방지계획 수립 시행
	23.	수질·대기·환경오염자동측정망(TMS)운영
	24.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수리
	25.	환경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2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연안해양 포함)
	27.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8.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9.	저수조청소업 신고에 관한 사항
	30.	환경관련 정책, 시책, 현안사항 업무
	31.	환경사범 수사 업무
	32.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수리
	34.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35.	유해조수포획허가 및 수렵면허
	36.	야생동물 구호
	37.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38.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관리
	39.	먹는샘물공동시설(약수터)관리 및 수질검사

1 페이지
2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후 에 너 지	1.	기후변화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정 책 과	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3.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전기, 수도)
	4.	녹색구매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
	5.	기후환경네트워크 관련 업무 추진
	6.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7.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관리
	8.	환경교육 총괄
	9.	절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1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1.	생물다양성관리사업
	12.	가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13.	가스 안전점검 사후관리
	14.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허가)에 관한 사무
	15.	고압가스업(운반자, 수입업자 등록)에 관한 사무
	16.	액화석유가스업(충전, 판매, 가스용품제조, 저장 허가)에 관한 사무
	1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18.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및 가스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19.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20.	도시가스업(충전, 공급시설)에 관한 사무
	21.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22.	가스안전관리 계도·홍보
	23.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에 관한 사무
	24.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에 관한 사무
	25.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관련사무
	26.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27.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28.	전력효율향상사업에 관한 업무
	29.	석탄가공업에 관한 사무
	30.	난방연료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업무
	3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련 업무

1 페이지
2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경 제 정 책 과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특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
	4.	지방 물가지도 단속 및 동향관리
	5.	물가대책위원회 관리 및 개최
	6.	소비자 고발 센터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7.	지역 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
	8.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 시행
	9.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10.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
	11.	가격 표시제 지도단속
	12.	가격 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13.	우수토산품등의 개발보급
	14.	토산품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보호
	15.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
	16.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7.	농어업 및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업무
	18.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업무
	1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업무
	20.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업무
	2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2.	종자 및 비료에 관한 업무
	23.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24.	농수산물 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업무
	2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26.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27.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28.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1 페이지

	29.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업무
	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1.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업무
	32.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3.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34.	식물방역에 관한 업무
	35.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36.	수산업에 관한 업무
	37.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8.	내수면 어업에 관한 업무
	3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
	40.	복권업소 지도 단속
	41.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42.	대부업에 관한 사무
	43.	통신 · 방문 · 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무
	44.	담배판매소매업에 관한 사무
	45.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46.	재래시장인정 등록 및 관리
	47.	어선관리에 관한 업무
	48.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49.	어촌어항에 관한 업무
	50.	소금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51.	축산업에 관한 업무
	52.	송 · 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
	5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무
	54.	가축 전염병 예방에 관한 업무
	55.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
	56.	수의사에 관한 업무
	5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58.	사료관리에 관한 업무
	5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업무
	60.	말산업육성에 관한 업무
	61.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62.	축산자조금의 조성에 관한 업무
	6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64.	초지관리에 관한 업무
	65.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
	66.	지역화폐에 관한 사무
	67.	경제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2 페이지
3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업 지 원	1.	노동행정의 계획 수립 시행
일 자 리 과	2.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
	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4.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5.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공장 신·증설 및 이전승인
		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다.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사무
		라. 입지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마. 공장 휴·폐업 신고 및 공장등록증명 발급
		바. 불법 공장 단속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8.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선정추진
	9.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운영
	10.	지식재산기반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1.	중소기업창업 관련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무
	12.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수립 시행
	13.	공예품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14.	품질경영 촉진에 관한 사무
	15.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
	16.	해외 판로개척 계획 수립
		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무
		나. 해외박람회 참가에 관한 사무
		다. 해외 지사화 사업에 관한 사무
	17.	계량기에 관한 사무
	18.	계량증명업등록에 관한 사무

1 페이지

	19.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무
	20.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
	21.	광공업에 관한 사무
	22.	공업지역 진흥 관련 사무
	23.	구조고도화 사무
	24.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무
	25.	혁신산업단지 사무
	26.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27.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
	28.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29.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31.	고용복지+센터 운영
	3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3.	공공근로사업 추진
	34.	기타 일자리관련 민원처리 상담
	3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36.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37.	생활임금액 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39.	일자리창출 및 지원시책 발굴 추진
	40.	일자리사업관련 전산망 운영 관리
	41.	50플러스일자리에 관한 사무

2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식품산업위생과	1.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공중위생업소의 영업(변경) 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폐업 신고 처리
	3.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관리 및 행정처분
	4.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수준서비스 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해촉 및 감시활동 관리
	6.	공중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8.	이·미용사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9.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변경) 처리
	10.	위생용품 제조업 품목제조보고 신고 처리
	11.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 관리
	12.	위생용품 및 위생물수건 수거검사 실시
	13.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5.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6.	식품소분판매업소(자동판매기,기타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7.	유통식품관리(식품제조가공업 등) 종합계획 수립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
	19.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설정 관리에 관한 사항
	20.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관리
	21.	자사제조용 및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사후관리
	22.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압류·폐기 등에 관한 사항
	23.	1399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4.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관리 및 지급
	25.	이물 신고에 따른 소비·유통·제조단계 조사 업무
	26.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7.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1페이지

	28.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9.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민원처리
	31.	식품 및 공중 무신고업소 단속 및 조치
	32.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33.	식중독 예방사업 관리
	34.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
	35.	식품 접객업소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36.	재난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 및 과태료 처분 업무
	37.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변경)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38.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영업등록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39.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변경)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40.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변경)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41.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변경, 종료신고 처리
	42.	식품품목제조 보고(변경)관리
	43.	조리사 면허증 발급
	44.	나트륨 저감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4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47.	서구브랜드식품 지정관리
	48.	음식문화축제 개최
	49.	나트륨,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
	50.	우수음식점(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등) 지정관리
	51.	식품진흥기금 운용 업무

2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 로 과	1.	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2.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
	3.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기본자료조사
	4.	도로부지 점용허가
	5.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
	6.	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조정자료 작성
	7.	국공유재산(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로점용 및 도로공작물제거 설치허가
		나.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8.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장비업체)등에 관한사항
	9.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0.	지하도겸 상가유지관리
	11.	도로, 기본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12.	구도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복구비, 점용료징수 (단, 2개구 이상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점용면적이 많은 구에서 타구와 협의 처리)
	13.	행정재산(도로)의 용도 폐지
	14.	도시계획사업(공원, 구거, 하천제외)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5.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7.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9.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0.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21.	도로관리계획 수립 시행 (도로폭 20미터 이하)
	22.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23.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시행 및 지도 (도로폭 20미터 이하)
	24.	도로표지판, 도로 부속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페이지

	25.	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와 시공감독 (도로폭 20미터 이하)
	26.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27.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기 및 변경
	28.	도로폭 20미터 이하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
	29.	사도 개설허가
	30.	구청장 포괄사업비 관리
	31.	굴삭기 유지관리
	3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33.	콘크리트 포장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34.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로구역 결정
		나.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다.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마. 설해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
		바. 도로공사 계획의 공고
		사.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아. 접도구역의 지정 등
		자. 비 관리청 사업의 지도감독
	35.	도로경관 조성사업
	36.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37.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
		가. 가로등시설물, 보안등 신설 및 교체
		나. 가로등시설물, 보안등 이설협의
		다. 도로조명시설 검사 및 안전점검
		라. 가로등시설물 인수 · 인계
		마. 가로등 교통사고 처리
		바. 가로등 굴착관련 업무
	38.	도심 보행길 환경개선

2 페이지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토지정보과	1.	토지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
	2.	과 공인관리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4.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
	5.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6.	개발부담금 물납허가
	7.	개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납부연기허가
	8.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
	9.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
	10.	개발비용 처리 통보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2.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3.	부동산중개사무소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
	14.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
	15.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16.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7.	부동산투기단속에 관한 업무
	18.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19.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조사
	20.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2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22.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2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24.	과 예산, 회계 업무
	25.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26.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
	27.	지적측량 기초점(도근점) 보존 및 관리

1 페이지

	28.	국가기준점 보존 및 관리
	29.	지적도근점 표석대장 정리
	30.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1.	토지이동처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3.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34.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
	35.	지적측량 성과검사
	36.	지적통계
	37.	지적측량장비 관리
	38.	축척변경
	39.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불부합사항 조사, 정리
	4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41.	토지이동시 지적전산정리업무
	4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관리 및 정리
	43.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고
	44.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신고
	45.	토지기록전산시스템 관리
	46.	지적전산논리 오류정비
	47.	지적전산 오기 정정
	48.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업무
	49.	국토정보센터 자료이용(조상땅 찾기)업무
	50.	KLIS 사용자권한부여 및 관리사항
	51.	KLIS 국가정보체계등록자료 관리
	52.	지적행정 사용자권한부여 및 관리사항
	53.	지적전산 정보관리
	54.	도시계획관련 제증명발급용 도면정리
	55.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56.	토지취득의 이용목적변경승인 업무

2 페이지

	57.	토지이용사후 실태조사
	58.	국토계획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59.	국토계획법 위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60.	소유권정리 업무
	61.	국가소송수행
	62.	법인아닌 사단, 재단 등록
	63.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64.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6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
	66.	주택거래신고 업무
	67.	부동산 등기과태료 부과 · 징수
	68.	지가산정 종합계획 수립
	69.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관리
	70.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71.	개별지가 열람 및 통보
	72.	공시지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73.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74.	지가조사반 편성운영
	75.	주민의견 접수 처리
	76.	의견제출지가 검증
	77.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78.	이의신청지가 검증
	79.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80.	국토교통부 지가 확인 요청
	81.	공시지가 결정
	82.	행정소송 수행
	8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8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징수
	85.	기반시설비용 과태료 부과 · 징수

3 페이지

	86.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87.	기반시설부담금 물납허가
	88.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납부연기허가
	89.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
	90.	기반시설특별회계 자금관리·교부
	91.	기반시설부담구역 분석 지정·고시
	92.	기반시설설치계획 작성
	93.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94.	기반시설설치 비용산정
	95.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96.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업무
	97.	도로명 주소 홍보
	98.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99.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유지보수
	100.	도로명법 시행 전 추진사업 정비
	101.	도로명 주소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비
	102.	전국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 민원처리
	103.	도로명 주소 예산업무
	104.	과내 체납액 정리
	105.	국토정보센터 DB 구축·운영
	106.	건물통합정보 통합 DB 구축·운영
	107.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체계 지원
	108.	공간정보 서버 운영
	109.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11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업무
	111.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회 운영
	112.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113.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및 조정관리
	1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공부정리

4 페이지

	11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운영관리
	116.	환지예정지증명원 발급
	117.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협의 업무
	118.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119.	정책정보 제공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120.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관리
	121.	공간정보(GIS) 운영
	122.	공간정보 분석 및 정책지도 제작
	123.	공간정보 행정주제도 제작 및 지원
	124.	임대차 신고제 정보관리(과태료부과, 정밀조사 등) 및 시스템 운영

5 페이지

[별표 2]

보건행정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보 건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행 정 과	2.	당직근무 및 복무관리
	3.	예산운영 및 전도금 관리, 회계 지출관리
	4.	청사관리
	5.	비품 및 소모품관리
	6.	진단서 및 제증명발급
	7.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8.	의료법에 의한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9.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10.	마약류관리관한법률에 따른 신고 및 지도·감독
	11.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12.	응급의료 법률에따른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3.	보건의료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 및 훈련
	14.	헌혈권장 법률에따른 사항
	15.	온열 및 한냉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16.	명절 연휴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시행
	17.	검진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8.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19.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1.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사업
	22.	모자보건사업 추진
	23.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24.	일반(양방) 및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25.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26.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7.	각종 보건통계

1 페이지

건강증진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 강 증 진 과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복무, 보안관리
	3.	예산운영 및 회계·지출 관리
	4.	차량관리
	5.	물품 및 기록물관리
	6.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각종 보건통계
	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9.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10.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전반
	11.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2.	구강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1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15.	의료장비 등 비품 및 소모품 관리
	16.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8.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19.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1.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2.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23.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4.	각종 보건통계
	25.	암 관리 및 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6.	노인 안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27.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8.	취약계층 일반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
	29.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0.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1.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1 페이지

치매정신돌봄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치 매 정 신	1.	서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돌 봄 과	2.	예산 운영 및 회계·지출 관리
	3.	차량관리
	4.	물품 및 문서, 기록물 관리
	5.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8.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10.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11.	쉼터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12.	치매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치매 인식개선·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14.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치매가족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7.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0.	각종 보건통계

1 페이지

〔별표 3〕

출장소 사무분장표 〔제11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검 단 출 장 소	1.	출장소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관리
	4.	회계관리 및 물품출납 보관
	5.	공보, 홍보,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 향교, 사찰,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공채·지방채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관리
	9.	상수도, 자연보호, 수질보전에 관한 사무
	10.	농지개량에 관한 사무
	11.	환경, 위생, 산업, 상공에 관한 사항
	12.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13.	건설에 관한 사무
	14.	건축에 관한 사무
	15.	자연재해 방재대책
	16.	보안등에 관한 사무
	17.	재산세 과세·징수
	18.	등록면허세 면허 및 등록(부동산·법인) 과세 · 징수
	19.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20.	지방세 체납관련 민원 처리 및 체납액 징수
	21.	취득세(부동산) 부과·징수(세무조사, 비과세·감면관리, 과점주주 제외)
	22.	관허사업 제한 및 철회
	23.	도시녹화
	24.	산불예방 및 진화
	25.	등산로 유지보수
	26.	가로수 식재 및 관리
	27.	공동주택 조경협회
	28.	도시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9.	녹지조성
	30.	조경시설 유지관리(출장소 조경분야 포함)
	31.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
	32.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부과
	33.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34.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법적이행사항 (보험가입, 안전점검, 안전교육, 정기시설검사)
	35.	가로수·수벽 점용
	36.	시민 기념식수
	37.	시설녹지 유지관리
	3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1 페이지
2 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한다.

별표 3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같은 표 중 노인복지과 전에 세무2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한다.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세무2과	1	취득세 부과 징수 가. 부동산 (세무조사, 과점주주, 감면사후관리 제외)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	

별표 4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2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주민세(재산분)”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390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1,385	
		2급	1	행정 1
		4급	8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4
		5급	73	행정 10, 의무 4,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4, 행정·사회복지·보건 4,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공업·환경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행정·환경·시설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6급	315	행정 90, 세무 18, 전산 1, 사회복지 18, 속기 2, 공업 8, 농업 1, 녹지 6, 수의 1, 보건 5, 의료기술 1, 간호 1, 환경 6, 시설 26, 방송통신 1, 운전 6, 전화상담운영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13, 행정·사회복지 39, 행정·공업 2, 행정·농업 1, 행정·녹지 2, 행정·보건 5, 행정·간호 1, 행정·환경 7, 행정·시설 13, 행정·방송통신 4, 사회복지·간호 1,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행정·공업·환경 2, 행정·공업·시설 2, 행정·보건·간호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9,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401	행정 146, 세무 20, 전산 6, 사회복지 61, 공업 9, 농업 2, 녹지 8, 수의 3, 해양수산 1, 보건 17, 의료기술 4, 간호 17, 환경 12, 시설 54,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4,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농업·수의 1, 보건·간호 2, 보건·환경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383	행정 139, 세무 9, 전산 2, 사회복지 68, 공업 14, 농업 1, 녹지 7, 보건 8, 의료기술 1, 간호 31, 환경 17, 시설 40,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1,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7, 행정・공업 1, 행정・농업 1, 행정・간호 1, 행정・시설 5,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2,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9급	204	행정 84, 세무 14, 사회복지 41, 공업 6, 농업 1, 녹지 5, 보건 3, 의료기술 2, 환경 9, 시설 20,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3,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2
	별정직	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2	일반비서 2
		9급	0	
	연구직	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구 본 청	계		842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837	
		2급	1	행정 1
		4급	6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4
		5급	39	행정 8,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2, 행정·방송통신 1, 행정·공업·환경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6급	220	행정 74, 세무 16, 전산 1, 사회복지 18, 공업 7, 농업 1, 녹지 5, 수의 1, 보건 5, 환경 6, 시설 24, 방송통신 1, 운전 3, 전화상담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9, 행정·사회복지 9,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5, 행정·시설 13, 행정·방송통신 3,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환경 1,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공업·환경 2,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252	행정 87, 세무 18, 전산 6, 사회복지 31, 공업 8, 농업 1, 녹지 7, 수의 3, 해양수산 1, 보건 11, 환경 12, 시설 49,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2, 행정·사회복지 2,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농업·수의 1, 보건·환경 1
		8급	207	행정 73, 세무 8, 전산 2, 사회복지 24, 공업 14, 농업 1, 녹지 6, 보건 4, 환경 17, 시설 35,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공업 1, 행정·시설 5, 공업·보건 1, 보건·환경 2
		9급	112	행정 38, 세무 13, 사회복지 6, 공업 6, 농업 1, 녹지 3, 보건 1, 환경 9, 시설 20,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2	일반비서 2
		9급	0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의회사무국	일반직	소계	20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8	행정 4, 속기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7급	4	행정 4
		8급	4	행정 3, 운전 1
		9급	1	행정 1
보 건 소	일반직	소계	120	
		4급	1	기술 1
		5급	8	의무 4, 행정・보건・의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6급	21	행정 1, 의료기술 1, 간호 1, 사회복지・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9,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34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17, 운전 1, 보건・간호 2,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8급	47	행정 2, 사회복지 2, 보건 1, 의료기술 1, 간호 31, 운전 1, 행정・간호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9급	9	행정 2, 사회복지 1, 보건 2, 의료기술 2, 운전 1, 행정・시설 1
출 장 소	일반직	계	45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13	행정 1, 세무 2, 공업 1, 녹지 1, 시설 2,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4	행정 2, 세무 2, 공업 1, 농업 1, 녹지 1, 보건 1, 시설 5, 행정・세무 1
		8급	12	세무 1, 녹지 1, 보건 3, 시설 5, 행정・농업 1, 공업・환경 1
		9급	5	행정 2, 세무 1, 녹지 2
동	일반직	계	363	
		5급	23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4, 행정・사회복지・보건 4,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보건・시설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6급	53	행정 10, 운전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29,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간호 1, 행정・환경 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7급	97	행정 53(행정복지 1), 사회복지 30, 운전 9, 사무운영 3 행정・사회복지 2
		8급	113	행정 61(행정복지 5), 사회복지 42, 운전 9, 행정・사회복지 1,
		9급	77	행정 41(행정복지 3), 사회복지 34, 운전 2

[별표 2]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842	
감사담당관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7급	6	행정 4, 시설 2
소통협력 담당관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행정 3
		7급	5	행정 1, 전산 2, 사회복지 1, 시설 1
		8급	1	행정·전산 1
		9급	1	행정 1
기획예산 담당관	일반직	소계	28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방송통신 1
		6급	9	행정 6, 세무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7급	11	행정 11
		8급	3	행정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9급	3	행정 1, 방송통신 2
미래기획단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시설 2, 행정·시설 1
		7급	3	행정 1, 환경 1, 시설 1
		8급	3	시설 2, 행정·시설 1
		9급	2	시설 2
스마트에코 시티추진단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6급	4	행정 1, 행정·시설 1, 행정·방송통신 1, 환경·시설 1
		7급	4	시설 3, 방송통신 1
		9급	5	행정 1, 시설 3, 방송통신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홍보정책담당관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1, 전산 1
		7급	6	행정 2, 전산 4
		8급	4	행정 2, 전산 2
		9급	1	행정 1
도시기획담당관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1, 시설 2, 행정·시설 2, 녹지·시설 1
		7급	10	행정 3, 시설 7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2	시설 2
총무과		**계**	29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25	
		2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6급	8	행정 7, 운전 1
		7급	5	행정 4,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7
		9급	1	행정 1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2	일반비서 2
공동체협치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4	행정 4
		8급	6	행정 6
		9급	1	행정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재 무 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운전 1, 시설 1
		7급	9	행정 5, 시설 2, 운전 1, 행정・시설 1
		8급	6	행정 4, 공업 2
		9급	1	행정 1
세 무 1 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 1
		6급	10	세무 6, 행정・세무 4
		7급	10	세무 9, 행정・세무 1
		8급	4	행정 1, 세무 3
		9급	4	세무 2, 행정・세무 2
세 무 2 과	일반직	**소계**	37	
		5급	1	행정 1
		6급	11	세무 8, 행정・세무 3
		7급	9	세무 8, 행정・세무 1
		8급	4	세무 4
		9급	12	세무 11, 행정・세무 1
민 원 봉 사 과		**계**	23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3	행정 3
		8급	8	행정 7, 사무운영 1
		9급	5	행정 5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복 지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39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7급	13	행정 3,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12	행정 1,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2
		9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노인복지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2
		7급	5	행정 1, 사회복지 3, 행정・사회복지 1
		8급	3	사회복지 3
		9급	1	행정 1
장 애 인 복 지 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6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2
		7급	5	사회복지 5
		8급	3	사회복지 3
		9급	5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3
교육혁신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8	행정 6, 사회복지 2
		8급	3	행정 3
		9급	4	행정 4
가정보육과	일반직	**소계**	**3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행정 2, 사회복지 5
		7급	9	행정 3, 사회복지 6
		8급	10	행정 3, 사회복지 5, 시설 1, 행정・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아동행복과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1
		7급	7	행정 2, 사회복지 4, 보건 1
		8급	9	행정 2,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9급	3	행정 2, 행정・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문화관광체육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1
		6급	7	행정 6, 행정·시설 1
		7급	5	행정 4,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6, 시설 1
클린도시과	일반직	**소계**	24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환경 1
		6급	5	환경 3, 행정·환경 1, 공업·환경 1
		7급	4	행정 1, 환경 3
		8급	8	공업 2, 환경 6
		9급	5	공업 1, 환경 4
환경관리과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환경 1
		6급	3	환경 2, 행정·환경 1
		7급	3	환경 3
		8급	8	행정 1, 환경 7
		9급	4	환경 3, 행정·환경 1
기후에너지정책과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공업·환경 1 (개방형)
		6급	3	공업 1, 행정·공업·환경 2
		7급	4	공업 3, 환경 1
		8급	2	공업 1, 행정·공업 1
		9급	1	행정·환경 1
생태하천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환경·시설 1
		6급	7	행정 1, 공업 2, 시설 1, 운전 1, 보건·환경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8	행정 1, 공업 1, 환경 2, 시설 4
		8급	4	녹지 1, 보건 1, 시설 2
		9급	3	행정 1, 공업 1, 시설 1
안전총괄과	일반직	**소계**	24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시설 1
		6급	8	행정 2, 시설 1,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환경・시설 1
		7급	7	행정 2, 환경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8급	5	공업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9급	3	행정 1, 시설 1, 방재안전 1
자원순환과	일반직	소계	36	
		5급	1	행정・보건・환경 1
		6급	10	행정 3, 환경 1, 행정・환경 3, 행정・시설 1, 공업・보건 1, 행정・보건・환경 1
		7급	10	행정 6, 보건 1, 환경 1, 행정・환경 1, 보건・환경 1
		8급	9	행정 3, 환경 4, 보건・환경 2
		9급	6	행정 4, 환경 2
공원녹지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7	녹지 5,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7급	7	녹지 7
		8급	5	녹지 5
		9급	3	녹지 3
경제정책과	일반직	소계	25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농업・수의 1
		6급	6	행정 4, 농업 1, 수의 1
		7급	11	행정 5, 농업 1, 수의 3, 해양수산 1, 농업・수의 1
		8급	5	행정 2, 농업 1, 시설 2
		9급	1	농업 1
기업지원일자리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공업 1
		6급	7	행정 3,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7급	6	행정 3, 공업 1, 시설 1, 기계운영 1
		8급	3	행정 1, 공업 2
		9급	4	행정 2, 공업 2
식품산업	일반직	소계	2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위 생 과		5급	1	행정・보건 1
		6급	7	보건 5, 행정・보건 2
		7급	9	보건 9
		8급	4	보건 3, 공업・보건 1
		9급	2	보건 1, 행정・보건 1
교 통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공업・시설 1
		6급	5	행정 3, 시설 1, 행정・공업 1
		7급	4	행정 3, 공업 1
		8급	5	행정 3, 공업 1, 시설 1
		9급	2	행정 2
주 차 관 리 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세무 1, 시설 1
		7급	3	행정 1, 시설 1, 사무운영 1
		8급	5	행정 4, 공업 1
		9급	1	행정 1
차 량 민 원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행정 2, 행정・세무 2
		7급	6	행정 4, 세무 1, 공업 1
		8급	9	행정 8, 세무 1
		9급	3	행정 2, 공업 1
도 로 과	일반직	**소계**	28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시설 1
		6급	8	행정 2, 공업 2, 시설 3, 행정・시설 1
		7급	6	행정 2, 공업 1, 시설 3
		8급	11	공업 1, 시설 7, 기계운영 1, 행정・시설 2
		9급	1	공업 1
건 축 과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4	행정 1, 시설 3
		7급	4	시설 4
		8급	10	행정 1, 공업 3, 시설 6
		9급	8	시설 7, 행정・시설 1
주 택 과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시설 1
		6급	4	시설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시설 1
		7급	5	사회복지 1, 시설 4
		8급	5	시설 4, 행정・시설 1
		9급	3	사회복지 1, 시설 2
도시재생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1, 시설 2, 사무운영 1, 행정・시설 2
		7급	6	행정 1, 시설 5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2	행정 1, 시설 1
토지정보과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시설 5, 행정・시설 1
		7급	12	행정 1, 시설 10, 행정・시설 1
		8급	6	행정 3, 시설 2, 행정・시설 1
		9급	1	시설 1

[별표 4]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20	
보건행정과	일반직	계	23	
		4급	1	기술 1
		5급	4	의무 3,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4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4	보건 2, 의료기술 1, 보건·간호 1
		8급	9	행정 2, 보건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간호 4, 보건·간호 1
		9급	1	행정 1
감염병대응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6급	3	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7급	8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운전 1
		8급	6	간호 1, 운전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9급	1	운전 1
건강증진과	일반직	계	43	
		5급	2	의무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9	행정 1, 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7급	13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6,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8급	17	의료기술 1, 간호 13, 행정·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9급	2	사회복지 1, 보건 1
치매정신돌봄과	일반직	계	35	
		5급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5	사회복지·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7급	9	간호 9
		8급	15	사회복지 2, 간호 13
		9급	5	행정 1, 보건 1, 의료기술 2, 행정·시설 1

[별표 5]

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45	
검 단 출 장 소	일반직	5급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6급	13	행정 1, 세무 2, 공업 1, 녹지 1, 시설 2,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 · 세무 1, 행정 · 농업 1, 행정 · 보건 1, 행정 · 공업 · 시설 1
		7급	14	행정 2, 세무 2, 공업 1, 농업 1, 녹지 1, 보건 1, 시설 5, 행정 · 세무 1
		8급	12	세무 1, 녹지 1, 보건 3, 시설 5, 행정 · 농업 1, 환경 · 공업 1
		9급	5	행정 2, 세무 1, 녹지 2

[별표 6]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363	
검암경서동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 공업 · 농업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6	행정 3, 사회복지 3
		8급	8	행정 5,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연 희 동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3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8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9급	7	행정 3, 사회복지 4
청 라 1 동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7	행정 4(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운전 1
		8급	5	행정 4,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청 라 2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환경 1
		7급	2	행정 2
		8급	7	행정 5,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청 라 3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무운영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4	행정 3(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정 1 동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3	행정・사회복지 2, 행정・보건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5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3
가 정 2 동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7급	1	행정 1
		8급	4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정 3 동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1	행정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운전 1
신 현 원 창 동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3	행정 1, 행정・사회복지 2
		7급	6	행정 3, 사회복지 3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석 남 1 동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3	행정 1, 행정・사회복지 2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8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석 남 2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 환경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8	행정 3, 사회복지 4, 운전 1
		9급	1	행정 1
석 남 3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2	행정 · 녹지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9급	1	행정 1(행정복지)
가 좌 1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6급	2	행정 · 세무 · 공업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8급	8	행정 4, 사회복지 3, 운전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2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방송통신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3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가 좌 4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3,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검 단 동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1
		6급	3	행정 · 사회복지 2, 행정 · 세무 · 농업 1
		7급	9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 ·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불 로 대 곡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원 당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보건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방송통신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당 하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8급	7	행정 4,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오 류 왕 길 동	일반직	**소계**	17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2	행정・보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8급	6	행정 3, 사회복지 3
		9급	3	행정 3
마 전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9급	4	행정 3, 운전 1
아 라 동		**소계**	10	
		5급	1	행정・환경・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간호 1
		7급	2	행정 2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7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80(1999.06.23.)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7호선, 사업명: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7호선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선)사업
   【명칭】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선) L=303m, B=3m 중
   금회 개설 L=303m, B=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 서구 원당동	810-13	도	1,577.5	910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계				1,577.5	9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8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64호(2020.4.6.) 결정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신현동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신현동	237,040	감) 482	236,558	건설부고시 제54호 (1970.2.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 면적 변경 - 기정: 237,040㎡ → 변경: 236,558㎡ - 감) 482㎡	◦ 지적측량(분할) 결과 반영 - 석남동 산118-3번지(감: 523㎡) - 석남동 산118-6번지(증: 41㎡)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22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5.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5-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7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22 (금곡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03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1595 (금곡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31-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583 (마전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더원팰리스 주택
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7-3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28-1 (검암동)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6-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0 (청라동)	20101111	청라도라는 지명 반영	청라블루노바홈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1-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75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큰시내를 이르는 말	
7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1로 49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40-7	인천광역시 서구 대촌로25번길 9 (오류동)	20090922	대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5-3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7번길 25 (가좌동)	철거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합동화물 차고지
2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41번길 8 (가좌동)	철거	20090922	보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태원자동차공업사4동
3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161-9 (가좌동)	철거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85호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영세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1. 8. 31.	2021.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착한임대인	매출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연장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1)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 032-560-4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지구 AA12-1BL 공동주택 신축공사(서구)
2. 사업주체 : ㈜대광이엔씨 (대표 조영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5, 7층 702호(로제비앙스퀘어)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1블록
   나. 대지면적 : 42,974㎡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18,001.1932㎡ (지하 2층, 지상 20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238,808,308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31. ~ 2022. 7 .15.
5. 변경사항
   - 붙임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참조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1부. 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대지위치 : 인천 검단지구 AA12-1BL

[건 축]

NO	변경목록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I. 배치도 변경					
1	단지 배치도 및 배치도 관련도면	입주자 민원으로 진출입구 3차선에서 4차로 변경요구	주출입구 3차선 (4m x 3 = 12m)	주출입구 4차선 (3m x 4 = 12m)	
2	비상차량 동선계획도	인천 서부 소방서 요청에 따른 변경	소방차 구획 (6m x 12m)	소방차 구획 (8m x 13m)	
II. 장애인 설치계획도 및 형별성능관계내역 변경					
3	장애인시설 설치계획도	석재마감 공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중앙난간 일체화 시공	주동현관 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난간턱2개 시공	경사로 중앙부 난간 일체형 시공	
4		장애인 승강기 버튼위치 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장애인 승강기 버튼 및 점자블럭 왼쪽	장애인 승강기 버튼 및 점자블럭 오른쪽	
5	형별성능 관계내역	하자발생 방지 및 품질향상	THK160 압축법 보온판 1호	THK 80압축법 보온판 1호 +70경질우레탄	
6		공사용 구조계산에 따른 슬래브 치수변경	R2:콘크리트 THK200	R2:콘크리트 THK150	
7		어린이집 최하층 바닥 단열재 변경(직접→간접) 및 시공상세치수적용	F1:단열재 THK150 F2:단열재 THK150	F1:단열재 THK110 F2:단열재 THK110	
8		시공상세도에 따른 상세치수 변경	F6:T80기포콘크리트 T100단열재	F6:T60시멘트몰탈 T40기포콘크리트 T110단열재	
9			F7:T30시멘트몰탈 T100단열재 T200 콘크리트	F7:T100시멘트몰탈 T150무근콘크리트 T210 콘크리트 T150 단열재	
10			F10:T60시멘트몰탈 T200 콘크리트 T90단열재	F10:T60시멘트몰탈 T100무근콘크리트 T150단열재 T300 콘크리트	
11			F11:T60시멘트몰탈 T120콘크리트 T90단열재	F11:T80시멘트몰탈 T150단열재 T300콘크리트	

NO	변경목록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III. 단위세대 변경					
12	단위세대 평면도	주방 씽크대 상부장 고정시 하자발생우려로 조적벽체 시공 변경	주방 AD/PD 경량벽체	주방 AD/PD 조적벽체	
13		하자발생 방지 및 품질향상	현관 발코니2 사이 경계벽 경량벽체 + 단열재	현관 발코니2 사이 경계벽 단열재 + 조적벽체	
14		입면도, 창호도에 맞춰 치수 조정	침실1, 드레스룸 난간턱 1330	침실1, 드레스룸 난간턱 1830	
15	단위세대 평면도	입주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창호 사이즈 변경	79타입 3100mm (900+1300+900)	79타입 3100mm (800+1500+800)	
16			84타입 3100mm (900+1300+900)	84타입 3600mm (900+1800+900)	
17	단열방수 결로방지	형별성능관계내역 표기사항 적용	단열일람표 천정,최상층직면THK180단열재	단열일람표 천정,최상층직면THK150단열재+상부30단열재	
18	단위세대 창호일람표	창호사이즈에 맞게 창호부호 표기 수정	침실1,드레스룸, (15*11,9*11)	침실1,드레스룸, (15*6,9*6)	
19		입주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창호 사이즈 변경	79타입 3100mm (900+1300+900)	79타입 3100mm (800+1500+800)	
20			84타입 3100mm (900+1300+900)	84타입 3600mm (900+1800+900)	
IV. 동평면도, 입면도 및 코어확대평면 변경					
21	1층 동평면도	- 석재마감 공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중앙난간 일체화 시공	- 주동현관 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난간턱2개 시공	- 경사로 중앙부 난간 일체형 시공	
22	1층 코어확대 평면도	- 주방 씽크대 상부장 고정시 하자발생우려로 조적벽체 시공 변경	- 주방 AD/PD 경량벽체	- 주방 AD/PD 조적벽체	

NO	변경목록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23	동 입면도	지붕 파라펫 특화디자인 적용	전체 콘크리트 난간	콘크리트 난간 + 투시형 난간	
24	101~104, 106동 입면도	특화 입면 매지적용에 따라 콘크리트 턱 높이 조정	창호 하부 콘크리트턱 (H=1440mm)	창호 하부 콘크리트턱 (H=1340mm)	
25	공통창호 일람표				
26	101~104, 106동 코어 단면도	평면 계단단수에 맞춰 단면 계단 수정	18단 (계단참 한쪽에서2단)	18단 (계단참 각각1단)	
27	107동 코어 단면도	기초레벨의 단일화에 따른 중층 추가	엘리베이터 피트에 기초타설	엘리베이터 피트 슬래브타설	
	107동 PIT층 평면도	107동 PIT층 평면도 추가	-	-	
V.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					
28	기전기실 확대 평면도	장비반입을 위한 전기실 창호 높이 변경	창호사이즈(24*21)	창호사이즈(24*28)	
29	기전기실 창호도				
30	관리사무소 입면도	특화 디자인 적용	관리사무소 지붕 전체 투시형난간	관리사무소 지붕 투시형난간 +콘크리트난간	
31	관리사무실, 휘트니스 창호도	부대시설 창호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창호 스펙 적용	THK22 복층유리	THK24 로이복층유리(아르곤주입)	
32		출입문 창호도 FIX창과 출입문 창호 스펙 구분	문,FIX : 강화유리	문:THK12 강화유리 FIX:THK24 로이복층유리(아르곤주입)	
33	어린이집 경로당 단면도	주차장상부 슬래브 타설후 매트기초 및 PIT층 형성	주차장 지붕슬래브와 어린이집 경로당 슬래브 통일	주차장 지붕슬래브 추가 및 어린이집 경로당 기초 추가	
34	어린이집 경로당 창호도	부대시설 창호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창호 스펙 적용	THK22 복층유리	THK24 로이복층유리(아르곤주입)	
35	근린생활시설 평면도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문 위치 변경	-	-	
36		레벨 단차 극복을 위한 PIT 추가	토목옹벽	건축구조물	
37		현황도로 레벨에 맞춰 근린생활시설 바닥레벨 변경	0	+150	

NO	변경목록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38	근린생활시설 입면도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문 위치 변경			
39		창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창호 나누기 적용 (높이 1500이하로 적용)			
40		현황도로 레벨 변경에 따른 창호 사이즈 변경	FIX창 : 2580*4800	FIX창 : 2580*4680	
41		현황도로 레벨에 맞춰 근린생활시설 바닥레벨 변경	0	+150	
42		현황도로 레벨 변경에 따른 그릴 사이즈 변경	3635*1200 3540*1200	3635*1050 3540*1050	
43	근린생활시설 단면도	입주자 편의증진을 위해 천장마감 추가	천장마감 없음	천장마감 추가 지하2층 : 2800 지하1층 : 2700	
44		레벨 단차 극복을 위한 PIT 추가	토목옹벽	건축구조물	
45		형별성능관계내역 단열재 두께 적용	THK 150	THK 180	
46		지하1층 천장마감 추가에 따른 복도천장 높이 변경	H=2900	H=2700	
47		현황도로 레벨에 맞춰 근린생활시설 바닥레벨 변경	0	+150	
48	근린생활시설 창호도	창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창호 나누기 적용 (높이 1500이하로 적용)	-	FIX창호 나누기 추가	
49		현황도로 레벨 변경에 따른 창호 사이즈 변경	FIX창 : 2580*4800	FIX창 : 2580*4680	
50		현황도로 레벨 변경에 따른 그릴 사이즈 변경	3635*1200 3540*1200	3635*1050 3540*1050	
51		지하1층 천장마감 추가에 따른 창호사이즈 변경	H=2900	H=2700	

NO	변경목록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52	경비실 창호도	부대시설 창호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창호 스펙 적용	-	창, FIX : THK24 로이 복층유리(아르곤주입)	
53	미화원휴게실 단면도	형별성능관계내역 표기된 사항 적용	단열재 위치 슬래브 하단	단열재 위치 슬래브 상단	
54	미화원휴게실 창호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창호 스펙 적용	THK5 투명유리	THK22 복층유리	
55	옥외광고물 설치계획도	주기추가	-	해당도면은 옥외광고물 설치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도면으로 광고물 설치이외 부분은 변경될수 있으며 해당부분의 건축도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 조]

NO	변경목록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I. 건축도면 변경사항 구조적용					
1	단위세대 구조평면도	건축 변경에 따른 구조도면 변경	-	-	
2	동구조평면도	- 건축 변경에 따른 구조도면 변경 - 107동 PIT층 구조 평면도 추가	-	-	
3	지하주차장 구조평면도	건축 변경에 따른 구조도면 변경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775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2021. 4. 23. 공포(제1860호)됨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내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2021. 4. 26. ~ 2021. 5. 11.

2. 공고내용: 지적공부 정리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동명	토지대장·지적도		동명	토지대장·지적도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당하동	84	47,052	원당동	84	47,052	
원당동	87	77,888	당하동	87	77,888	

*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붙임 참조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4. 알림사항: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작성된 지적공부의 시행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서 원당동으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합 계	84필지		47052㎡	84필지			47052㎡
당하동	188-8	구	89	원당동	902	구	89
당하동	188-9	구	406	원당동	903	구	406
당하동	188-10	구	26	원당동	904	구	26
당하동	188-11	구	16	원당동	905	구	16
당하동	188-24	구	729	원당동	906	구	729
당하동	188-25	구	135	원당동	907	구	135
당하동	188-27	구	910	원당동	908	구	910
당하동	279-4	도	127	원당동	909	도	127
당하동	279-8	답	703	원당동	910	답	703
당하동	280-13	답	138	원당동	911	답	138
당하동	281-5	도	396	원당동	912	도	396
당하동	281-16	답	373	원당동	913	답	373
당하동	281-17	답	904	원당동	914	답	904
당하동	313-2	도	570	원당동	915	도	570
당하동	313-6	대	502	원당동	916	대	502
당하동	313-7	답	217	원당동	917	답	217
당하동	313-8	답	117	원당동	918	답	117
당하동	314-2	도	3	원당동	919	도	3
당하동	314-8	답	8	원당동	920	답	8
당하동	314-9	도	1	원당동	921	도	1
당하동	314-10	도	176	원당동	922	도	176
당하동	314-11	도	130	원당동	923	도	130
당하동	314-12	도	69	원당동	924	도	69
당하동	314-16	답	256	원당동	925	답	256
당하동	314-17	답	292	원당동	926	답	292
당하동	315-4	답	226	원당동	927	답	226
당하동	315-8	답	277	원당동	928	답	277
당하동	315-12	답	828	원당동	929	답	828
당하동	315-13	답	801	원당동	930	답	801
당하동	319-4	답	36	원당동	931	답	36
당하동	319-7	답	5	원당동	932	답	5
당하동	319-10	답	337	원당동	933	답	337
당하동	319-11	답	905	원당동	934	답	905
당하동	320-7	도	54	원당동	935	도	54
당하동	320-8	답	77	원당동	936	답	77
당하동	340-6	답	405	원당동	937	답	405
당하동	340-7	답	154	원당동	938	답	154
당하동	341-11	답	201	원당동	939	답	201
당하동	341-12	답	21	원당동	940	답	21
당하동	383-4	장	404	원당동	941	장	404
당하동	383-5	장	467	원당동	942	장	467
당하동	388-4	구	45	원당동	943	구	45
당하동	388-5	구	24	원당동	944	구	24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서 원당동으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당하동	394-1	구	46	원당동	945	구	46
당하동	394-2	구	2,228	원당동	946	구	2,228
당하동	394-3	구	30	원당동	947	구	30
당하동	395-1	구	17	원당동	948	구	17
당하동	397-2	구	358	원당동	949	구	358
당하동	397-4	잡	96	원당동	950	잡	96
당하동	401	도	973	원당동	951	도	973
당하동	401-1	도	45	원당동	952	도	45
당하동	401-2	도	71	원당동	953	도	71
당하동	401-6	도	13	원당동	954	도	13
당하동	401-7	도	4	원당동	955	도	4
당하동	401-8	도	20	원당동	956	도	20
당하동	401-18	도	2,215	원당동	957	도	2,215
당하동	405-1	구	56	원당동	958	구	56
당하동	405-2	구	4,314	원당동	959	구	4,314
당하동	407-6	잡	10	원당동	960	잡	10
당하동	407-7	잡	7	원당동	961	잡	7
당하동	408-2	구	4,529	원당동	962	구	4,529
당하동	409-2	잡	1,748	원당동	963	잡	1,748
당하동	409-5	창	2,611	원당동	964	창	2,611
당하동	410-8	답	54	원당동	965	답	54
당하동	412	답	248	원당동	966	답	248
당하동	412-1	구	731	원당동	967	구	731
당하동	412-2	도	150	원당동	968	도	150
당하동	413	답	1,080	원당동	969	답	1,080
당하동	413-1	답	1,457	원당동	970	답	1,457
당하동	413-2	답	1,277	원당동	971	답	1,277
당하동	413-3	답	628	원당동	972	답	628
당하동	413-4	전	3,024	원당동	973	전	3,024
당하동	414	도	517	원당동	974	도	517
당하동	414-4	구	464	원당동	975	구	464
당하동	414-5	구	350	원당동	976	구	350
당하동	414-6	구	1	원당동	977	구	1
당하동	415-6	전	389	원당동	978	전	389
당하동	415-7	전	1,628	원당동	979	전	1,628
당하동	415-8	답	405	원당동	980	답	405
당하동	416-3	도	1	원당동	981	도	1
당하동	964-9	구	364	원당동	982	구	364
당하동	964-25	구	1,967	원당동	983	구	1,967
당하동	964-26	구	345	원당동	984	구	345
당하동	981	구	21	원당동	985	구	21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서 당하동으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합 계	87필지		77888㎡	87필지			77888㎡
원당동	457-1	대	658	당하동	1141	대	658
원당동	457-3	창	608	당하동	1142	창	608
원당동	457-4	전	2,123	당하동	1143	전	2,123
원당동	461	답	753	당하동	1144	답	753
원당동	461-1	답	1,403	당하동	1145	답	1,403
원당동	461-2	전	2,667	당하동	1146	전	2,667
원당동	462	전	4,059	당하동	1147	전	4,059
원당동	462-1	전	791	당하동	1148	전	791
원당동	462-2	답	84	당하동	1149	답	84
원당동	462-3	답	2	당하동	1150	답	2
원당동	462-4	전	522	당하동	1151	전	522
원당동	462-5	답	13	당하동	1152	답	13
원당동	462-6	답	11	당하동	1153	답	11
원당동	462-7	답	2	당하동	1154	답	2
원당동	462-8	답	1,194	당하동	1155	답	1,194
원당동	462-9	답	44	당하동	1156	답	44
원당동	463	답	104	당하동	1157	답	104
원당동	463-4	답	12	당하동	1158	답	12
원당동	463-5	답	1,375	당하동	1159	답	1,375
원당동	463-6	답	505	당하동	1160	답	505
원당동	470	도	551	당하동	1161	도	551
원당동	470-1	도	103	당하동	1162	도	103
원당동	470-3	도	36	당하동	1163	도	36
원당동	470-4	도	66	당하동	1164	도	66
원당동	481	답	5	당하동	1165	답	5
원당동	481-2	답	18	당하동	1166	답	18
원당동	481-3	답	1,338	당하동	1167	답	1,338
원당동	481-6	답	322	당하동	1168	답	322
원당동	481-7	답	125	당하동	1169	답	125
원당동	481-8	답	134	당하동	1170	답	134
원당동	481-9	답	1,094	당하동	1171	답	1,094
원당동	481-10	답	1,758	당하동	1172	답	1,758
원당동	482	답	2,675	당하동	1173	답	2,675
원당동	482-1	답	1,945	당하동	1174	답	1,945
원당동	482-2	답	3,220	당하동	1175	답	3,220
원당동	482-3	답	851	당하동	1176	답	851
원당동	482-4	답	2,072	당하동	1177	답	2,072
원당동	482-5	답	1,281	당하동	1178	답	1,281
원당동	483-1	전	2,562	당하동	1179	전	2,562
원당동	483-2	답	2,523	당하동	1180	답	2,523
원당동	483-3	답	3,409	당하동	1181	답	3,409
원당동	483-4	답	1,354	당하동	1182	답	1,354
원당동	483-5	답	2,711	당하동	1183	답	2,711

원당동	483-6	답	1,476	당하동	1184	답	1,476
원당동	483-9	답	652	당하동	1185	답	652
원당동	483-10	답	948	당하동	1186	답	948
원당동	483-11	답	11	당하동	1187	답	11
원당동	483-12	답	50	당하동	1188	답	50
원당동	483-13	답	1,021	당하동	1189	답	1,021
원당동	483-14	답	800	당하동	1190	답	800
원당동	485-2	답	1,000	당하동	1191	답	1,000
원당동	485-3	답	4,067	당하동	1192	답	4,067
원당동	485-7	답	739	당하동	1193	답	739
원당동	485-8	답	1,329	당하동	1194	답	1,329
원당동	485-9	답	8	당하동	1195	답	8
원당동	485-10	답	8	당하동	1196	답	8
원당동	485-11	답	941	당하동	1197	답	941
원당동	485-12	답	614	당하동	1198	답	614
원당동	486-21	도	20	당하동	1199	도	20
원당동	486-27	도	34	당하동	1200	도	34
원당동	486-28	도	2,696	당하동	1201	도	2,696
원당동	486-29	도	63	당하동	1202	도	63
원당동	508	답	2,966	당하동	1203	답	2,966
원당동	508-1	답	1,829	당하동	1204	답	1,829
원당동	508-2	답	1,869	당하동	1205	답	1,869
원당동	508-3	답	2,252	당하동	1206	답	2,252
원당동	509-10	구	3,096	당하동	1207	구	3,096
원당동	539-4	구	10	당하동	1208	구	10
원당동	539-5	구	239	당하동	1209	구	239
원당동	539-6	구	99	당하동	1210	구	99
원당동	539-7	구	497	당하동	1211	구	497
원당동	539-11	구	16	당하동	1212	구	16
원당동	539-12	구	276	당하동	1213	구	276
원당동	539-13	구	23	당하동	1214	구	23
원당동	539-14	구	531	당하동	1215	구	531
원당동	539-15	구	90	당하동	1216	구	90
원당동	539-25	구	28	당하동	1217	구	28
원당동	539-26	구	39	당하동	1218	구	39
원당동	539-27	구	28	당하동	1219	구	28
원당동	539-28	구	45	당하동	1220	구	45
원당동	539-31	구	55	당하동	1221	구	55
원당동	539-32	구	63	당하동	1222	구	63
원당동	539-33	구	54	당하동	1223	구	54
원당동	539-34	구	87	당하동	1224	구	87
원당동	539-35	구	44	당하동	1225	구	44
원당동	539-36	구	78	당하동	1226	구	78
원당동	539-37	구	14	당하동	1227	구	1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776호

보상계획(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상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25-1번지 ~ 검암동 32번지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사업기간: 2020. 7. 6. ~ 2021. 12. 31.
○ 규 모(변경)
- 당초: L=0.24km, A=3,503m2
- 변경: L=0.24km, A=3,035.4m2
○ 주요내용: 하천확폭(B=7m 확보), 축제 262m, 교량재가설 1개소 등

2.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1. 5. 3. ~ 2021. 5. 17.(15일간)
○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세민빌딩 2층),
서구청 생태하천과 하천팀(☏032-560-4537)

3. 대상토지 및 물건(변경)

○ “붙임” 으로 갈음하며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변경사유

- 시천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내역 반영
- 사업(공사)구간 미편입토지 제외 등

4. 이의신청방법

○ 공고 또는 통지된 용지조서(편입토지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경과 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보상시기

○ 보상협의 착수일 ~ 보상 대상물건의 취득을 위한 계약체결 시까지

○ 2021. 5.중 개별 통지 예정

6.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산정하며 세부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감정평가 후 별도 통보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인천광역시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합니다.

7. 보상절차

○ 보상계획 (변경)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보완) 및 보상금산정 → 개별 협의

- 협의 시: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가 시: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공탁) → 소유권이전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재결 관련기관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8. 기타사항

○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032-560-45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지조서(편입토지조서)

○ 당초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계	15필지		19,319	3,503						
1	검암동	485	도	13,077	742	국토교통부					
2	〃	36-2	답	3,574	595	정○섭	인천광역시 서구 꽃뫼1길 32	서인천농협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12	지상권, 근저당권	
								인천세무서	인천 동구 우각로 75	압류	
3	〃	35-2	답	1,984	396	조○운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47, 203동 601호				
4	〃	35-1	전	1,322	213	장○윤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48, 373동 1603호				
5	〃	35	답	1,068	283	서○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61, 102동 802호				
6	〃	34	전	2,228	224	박○금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53, 105동 1203호				
7	〃	33-3	답	2,427	304	박○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번길 46	박○자 외4인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150, 1611동 702호	가압류	
8	〃	32	전	783	143	배○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6, 112동 601호				
9	〃	25-1	전	1,171	21	박○열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56, 105동 104호				
10	〃	27-5	도	119	37	오○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번길 96-40	인천산림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57	근저당권	
11	〃	27-4	창	300	5	오○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번길 96-40	㈜생보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토지신탁	
12	〃	27-1	전	635	44	문○남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31, B동 505호	서인천농협 (건지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39	근저당권	
13	〃	30-4	전	1,742	65	최○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102동 2504호				
14	〃	30-2	답	5,058	337	박○주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53, 105동 1504호				
15	〃	31	답	2,466	94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꽃뫼길 214	서인천농협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12	근저당권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계	15필지		31296.7	3035.4						
1	검암동	485	도	11807.7	1103.5	국토교통부					
2	〃	36-1	도	49.0	15.7	정○섭	인천.5광역시 서구 꽃뫼1길 3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3~4층	근저당권	
								서인천농협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12	채권	
								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75	압류	
3	〃	36-3	답	609.0	368.8	정○섭	인천광역시 서구 꽃뫼1길 3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3~4층	근저당권	
								서인천농협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12	지상권, 채권	
								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75	압류	
4	〃	35-2	답	1984.0	222.7	조○운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47, 203동 601호				
5	〃	35-1	전	1322.0	162.2	장○윤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48, 373동 1603호				
6	〃	35	답	1068.0	219.4	서○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61, 102동 802호				
7	〃	34	전	2228.0	149.6	박○안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53, 105동 1203호				
8	〃	33-3	답	2427.0	156.5	박○환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번길 46				
9	〃	27-5	도	119.0	44.8	오○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번길 96-40	인천산림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57	근저당권	
10	〃	27-4	창	300.0	10.1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수탁자
11	〃	27-1	전	635.0	88.2	문○남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31, B동 505호	서인천농협 (건지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39	근저당권	
12	〃	28	전	2030.0	1.6	신○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301-10	국민은행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98	근저당권	
13	〃	30-4	전	1742.0	13.8	최○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102동 2504호				
14	〃	30-2	답	2510.0	451.2	박○주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53, 105동 1504호				
15	〃	31	답	2466.0	27.3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꽃뫼길 214	서인천농협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12	근저당권	

※ 2021.4.2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조회 기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7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마전지구 55블럭 일원, 석남동 650-77번지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21. 4. 28. ~ 2021. 5. 13.(16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 설정·변경/ 도로명 부여·변경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주민의견수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재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5. 의견 제출방법
   【별첨】 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행정복지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0)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2786)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11층 토지정보과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예비 도로명부여 조서 및 예비 도로구간

연번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기점		종점		제원		기초간격(m)	관할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로	자원순환로	미등록지 (도면 참고)		미등록지 (도면 참고)		6,587	13	20	오류왕길동	수도권매립지공사 동문을 시작으로 환경에너지타운까지 이어지는 길로써, 야생화단지, 골프장, 제2매립장, 폐자원 에너지시설, 제3매립장까지 자원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
2	로	녹색숲로	미등록지 (도면 참고)		미등록지 (도면 참고)		3,981	9	20	오류왕길동	도로 양 옆으로 울창한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첫 번째 구간의 도로로써 구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의 공간임을 의미
3	로	맑은누리로	미등록지 (도면 참고)		미등록지 (도면 참고)		5,616	17	20	오류왕길동	“깨끗한 세상” 뜻의 순 우리말로, 수도권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하는 것을 의미
5	길	가현로133번길	마전동	산91-11	마전동	226-4	297	8	20	검단동	가현로 시작점의 1,330m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4	길	중봉대로262번길	석남동	648	석남동	223-179	202	10	20	석남2동	중봉대로 시작점의 2,620m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 예비도로명 부여안(수도권매립지)

○ 예비도로명 부여안(가현로133번길, 중봉대로262번길)

도로명[구간] 부여 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연번 및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연번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신청(의견) 구간/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부여의견				

예비도로명/구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791호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3-8 일원「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종전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토지소재		종전토지(폐쇄)		확정토지(신규)		비 고
구	동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서구	마전동 대곡동	845	609,009	563	607,143.1	감 1,865.9㎡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번별조서 참조

4. 공고기간: 2021. 5. 3. ~ 2021. 5. 17.
5.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6.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합 계		**845필지**		**609,009**	
1	마전동	43-8	대	44	
2	마전동	47-6	대	6	
3	마전동	54-3	답	383	
4	마전동	54-4	공장용지	14,034	
5	마전동	55-5	대	262	
6	마전동	55-6	대	12	
7	마전동	55-7	도로	116	
8	마전동	56	전	271	
9	마전동	57-2	답	3,868	
10	마전동	57-3	답	992	
11	마전동	57-4	대	665	
12	마전동	57-5	답	1,318	
13	마전동	57-6	답	1,680	
14	마전동	58-1	전	694	
15	마전동	59	전	979	
16	마전동	59-1	전	400	
17	마전동	60-3	전	132	
18	마전동	60-4	전	10	
19	마전동	60-5	전	6	
20	마전동	60-6	전	293	
21	마전동	60-7	전	23	
22	마전동	60-8	전	12	
23	마전동	61-1	전	75	
24	마전동	68-4	전	331	
25	마전동	68-5	전	367	
26	마전동	68-6	전	315	
27	마전동	68-7	전	363	
28	마전동	68-8	전	363	
29	마전동	68-9	전	363	
30	마전동	68-10	전	413	
31	마전동	68-11	전	355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32	마전동	68-12	전	355	
33	마전동	69	전	243	
34	마전동	69-1	답	183	
35	마전동	69-2	답	455	
36	마전동	69-3	전	104	
37	마전동	70	전	443	
38	마전동	71-1	전	578	
39	마전동	71-2	전	613	
40	마전동	71-3	전	675	
41	마전동	72-2	전	1,173	
42	마전동	73	답	1,461	
43	마전동	73-4	전	2,532	
44	마전동	74	전	826	
45	마전동	75-1	답	3,395	
46	마전동	75-4	공장용지	619	
47	마전동	75-11	공장용지	308	
48	마전동	75-12	도로	87	
49	마전동	75-13	대	430	
50	마전동	75-14	잡종지	66	
51	마전동	75-15	대	346	
52	마전동	75-16	공장용지	448	
53	마전동	75-17	도로	242	
54	마전동	75-18	공장용지	141	
55	마전동	75-19	공장용지	145	
56	마전동	75-20	공장용지	290	
57	마전동	75-21	공장용지	289	
58	마전동	75-22	공장용지	289	
59	마전동	75-23	대	44	
60	마전동	75-24	공장용지	344	
61	마전동	75-25	공장용지	303	
62	마전동	75-26	공장용지	304	
63	마전동	76-1	답	724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64	마전동	76-2	답	1,607	
65	마전동	77-1	전	532	
66	마전동	77-2	답	945	
67	마전동	77-3	답	364	
68	마전동	78	답	1,408	
69	마전동	79	답	2,089	
70	마전동	80	답	1,170	
71	마전동	81	답	377	
72	마전동	82	답	1,845	
73	마전동	83	답	1,997	
74	마전동	84	답	1,229	
75	마전동	84-1	공장용지	1,590	
76	마전동	84-2	답	539	
77	마전동	84-3	답	368	
78	마전동	84-4	답	512	
79	마전동	85-1	답	387	
80	마전동	85-2	답	2,370	
81	마전동	85-3	답	2,741	
82	마전동	85-4	답	1,722	
83	마전동	86-1	전	436	
84	마전동	86-2	하천	278	
85	마전동	87-1	대	376	
86	마전동	87-2	대	376	
87	마전동	87-3	하천	261	
88	마전동	87-4	전	301	
89	마전동	87-5	전	279	
90	마전동	87-6	대	316	
91	마전동	87-7	대	48	
92	마전동	87-8	대	274	
93	마전동	87-9	대	60	
94	마전동	88-1	전	155	
95	마전동	88-2	전	777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96	마전동	89	구거	142	
97	마전동	90	전	542	
98	마전동	91	전	1,122	
99	마전동	91-1	전	232	
100	마전동	91-2	전	458	
101	마전동	92-1	전	1,511	
102	마전동	92-2	답	559	
103	마전동	93	답	866	
104	마전동	94-1	답	3,107	
105	마전동	94-2	답	2,063	
106	마전동	95	답	1,845	
107	마전동	96	답	1,498	
108	마전동	97	답	1,944	
109	마전동	98	답	2,321	
110	마전동	99	답	2,526	
111	마전동	100-1	답	2,823	
112	마전동	100-2	잡종지	361	
113	마전동	100-3	답	1,296	
114	마전동	100-4	대	372	
115	마전동	100-5	답	454	
116	마전동	100-6	대	322	
117	마전동	100-7	대	302	
118	마전동	100-8	답	550	
119	마전동	100-9	답	551	
120	마전동	101	답	2,430	
121	마전동	102	답	2,846	
122	마전동	103	대	496	
123	마전동	104	전	526	
124	마전동	105-1	답	2,324	
125	마전동	105-2	답	1,669	
126	마전동	106	전	724	
127	마전동	107	대	181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128	마전동	107-1	답	218	
129	마전동	107-2	도로	66	
130	마전동	107-3	도로	37	
131	마전동	108	전	496	
132	마전동	109	잡종지	996	
133	마전동	109-1	대	260	
134	마전동	109-2	대	179	
135	마전동	110	답	701	
136	마전동	110-1	대	221	
137	마전동	111	답	1,676	
138	마전동	112-2	전	694	
139	마전동	112-8	대	394	
140	마전동	112-10	전	220	
141	마전동	112-11	전	1,717	
142	마전동	112-12	전	371	
143	마전동	112-13	전	648	
144	마전동	112-14	전	2,045	
145	마전동	112-15	전	205	
146	마전동	112-16	대	221	
147	마전동	113-1	공장용지	5,507	
148	마전동	114	전	212	
149	마전동	114-1	전	807	
150	마전동	115-1	답	939	
151	마전동	115-3	도로	106	
152	마전동	116	답	976	
153	마전동	116-1	도로	412	
154	마전동	117	공장용지	906	
155	마전동	117-1	도로	269	
156	마전동	117-2	공장용지	1,050	
157	마전동	117-3	공장용지	1,051	
158	마전동	117-4	공장용지	973	
159	마전동	117-6	답	23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160	마전동	117-7	답	353	
161	마전동	118	전	942	
162	마전동	119	대	327	
163	마전동	119-1	답	318	
164	마전동	120	답	456	
165	마전동	121	전	792	
166	마전동	121-1	대	437	
167	마전동	121-2	전	1,161	
168	마전동	122	공장용지	310	
169	마전동	122-1	전	396	
170	마전동	122-2	공장용지	373	
171	마전동	122-3	공장용지	377	
172	마전동	122-4	공장용지	382	
173	마전동	123-1	대	165	
174	마전동	123-2	대	420	
175	마전동	123-3	전	367	
176	마전동	123-4	전	424	
177	마전동	123-5	전	618	
178	마전동	123-6	대	495	
179	마전동	124	대	403	
180	마전동	124-1	답	896	
181	마전동	125-1	답	1,514	
182	마전동	125-2	답	2,264	
183	마전동	125-3	답	734	
184	마전동	125-4	답	662	
185	마전동	125-5	답	704	
186	마전동	125-6	답	988	
187	마전동	125-7	답	641	
188	마전동	125-8	대	49	
189	마전동	125-9	답	362	
190	마전동	125-10	답	604	
191	마전동	125-11	대	253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192	마전동	126-1	답	1,934	
193	마전동	126-2	답	73	
194	마전동	126-3	답	66	
195	마전동	127-1	답	5,501	
196	마전동	127-2	답	618	
197	마전동	127-3	답	1,349	
198	마전동	128	답	225	
199	마전동	129-1	대	334	
200	마전동	129-2	대	665	
201	마전동	129-3	답	572	
202	마전동	129-4	전	655	
203	마전동	129-5	대	308	
204	마전동	129-6	전	400	
205	마전동	129-7	대	436	
206	마전동	129-8	전	367	
207	마전동	129-9	대	373	
208	마전동	129-10	전	1,377	
209	마전동	129-11	전	246	
210	마전동	129-13	전	567	
211	마전동	129-15	대	12	
212	마전동	129-16	대	17	
213	마전동	129-17	전	89	
214	마전동	129-18	전	74	
215	마전동	129-19	전	360	
216	마전동	129-20	전	244	
217	마전동	129-21	전	362	
218	마전동	129-22	전	40	
219	마전동	129-23	대	362	
220	마전동	129-24	대	388	
221	마전동	129-25	대	302	
222	마전동	129-26	전	569	
223	마전동	129-27	전	405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224	마전동	129-28	전	411	
225	마전동	129-29	전	478	
226	마전동	130-1	대	341	
227	마전동	130-2	대	565	
228	마전동	130-3	전	380	
229	마전동	130-4	대	332	
230	마전동	130-5	전	364	
231	마전동	130-6	전	245	
232	마전동	130-7	대	438	
233	마전동	130-8	대	83	
234	마전동	130-9	전	56	
235	마전동	130-10	대	242	
236	마전동	130-11	대	332	
237	마전동	131-1	전	473	
238	마전동	131-3	전	453	
239	마전동	131-4	전	820	
240	마전동	131-5	전	102	
241	마전동	133	전	495	
242	마전동	133-1	대	243	
243	마전동	133-2	전	104	
244	마전동	133-3	전	497	
245	마전동	134	전	403	
246	마전동	135	전	389	
247	마전동	135-1	대	253	
248	마전동	135-2	전	263	
249	마전동	135-3	대	253	
250	마전동	135-4	전	443	
251	마전동	135-5	전	470	
252	마전동	135-6	전	418	
253	마전동	136-1	대	347	
254	마전동	136-2	전	288	
255	마전동	136-3	대	128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256	마전동	136-4	대	100	
257	마전동	136-5	전	158	
258	마전동	137-1	대	364	
259	마전동	137-2	전	239	
260	마전동	137-3	대	462	
261	마전동	138	대	253	
262	마전동	138-1	대	192	
263	마전동	138-2	전	754	
264	마전동	138-3	대	247	
265	마전동	138-4	대	128	
266	마전동	139	대	488	
267	마전동	139-1	대	133	
268	마전동	140-1	전	445	
269	마전동	140-2	전	744	
270	마전동	143-1	전	1,504	
271	마전동	143-2	대	256	
272	마전동	143-3	대	18	
273	마전동	143-4	대	255	
274	마전동	144-1	전	704	
275	마전동	144-2	대	241	
276	마전동	144-4	전	304	
277	마전동	145-1	전	493	
278	마전동	145-2	대	473	
279	마전동	146	대	598	
280	마전동	146-1	대	66	
281	마전동	146-2	도로	106	
282	마전동	147-1	학교용지	8,661	
283	마전동	147-2	대	284	
284	마전동	147-6	전	327	
285	마전동	147-8	대	36	
286	마전동	147-9	대	489	
287	마전동	147-10	전	316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288	마전동	147-11	대	172	
289	마전동	147-12	대	407	
290	마전동	147-13	대	57	
291	마전동	147-14	전	153	
292	마전동	147-15	대	32	
293	마전동	147-16	대	275	
294	마전동	149	대	332	
295	마전동	149-1	대	226	
296	마전동	149-2	대	114	
297	마전동	149-3	도로	68	
298	마전동	149-4	대	322	
299	마전동	149-5	대	326	
300	마전동	150	대	483	
301	마전동	151	대	1,387	
302	마전동	151-1	대	299	
303	마전동	151-2	임야	484	
304	마전동	151-3	임야	166	
305	마전동	151-4	임야	131	
306	마전동	152	대	1,329	
307	마전동	153	대	536	
308	마전동	154	대	407	
309	마전동	155	전	344	
310	마전동	156	대	589	
311	마전동	156-1	대	589	
312	마전동	156-2	대	151	
313	마전동	157	대	701	
314	마전동	158	대	284	
315	마전동	159	대	291	
316	마전동	160-1	대	121	
317	마전동	160-2	대	175	
318	마전동	160-3	도로	129	
319	마전동	160-4	대	127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320	마전동	160-5	대	73	
321	마전동	160-6	대	261	
322	마전동	161-1	전	111	
323	마전동	161-2	도로	132	
324	마전동	161-3	전	110	
325	마전동	162	전	295	
326	마전동	162-1	전	95	
327	마전동	163	임야	53	
328	마전동	164-1	전	169	
329	마전동	164-2	전	221	
330	마전동	165	대	305	
331	마전동	165-1	대	483	
332	마전동	165-2	대	489	
333	마전동	165-3	대	276	
334	마전동	165-4	도로	4	
335	마전동	166-1	전	393	
336	마전동	166-2	대	521	
337	마전동	167-1	대	100	
338	마전동	167-2	대	86	
339	마전동	168-1	전	220	
340	마전동	168-2	도로	69	
341	마전동	168-3	대	7	
342	마전동	168-4	대	50	
343	마전동	168-5	전	73	
344	마전동	168-6	도로	19	
345	마전동	168-7	도로	11	
346	마전동	168-8	전	156	
347	마전동	169-1	대	126	
348	마전동	169-2	도로	40	
349	마전동	169-4	도로	7	
350	마전동	169-6	대	193	
351	마전동	169-7	대	84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352	마전동	169-8	대	23	
353	마전동	169-11	대	24	
354	마전동	169-12	대	32	
355	마전동	169-13	대	13	
356	마전동	169-14	대	23	
357	마전동	170-1	대	519	
358	마전동	170-2	대	30	
359	마전동	170-3	대	659	
360	마전동	170-5	대	192	
361	마전동	171-1	대	307	
362	마전동	171-2	전	486	
363	마전동	172-1	대	3	
364	마전동	173-2	전	393	
365	마전동	176-1	대	46	
366	마전동	176-2	대	745	
367	마전동	176-4	대	188	
368	마전동	176-6	도로	13	
369	마전동	176-7	대	162	
370	마전동	176-8	대	327	
371	마전동	176-9	도로	179	
372	마전동	176-13	대	10	
373	마전동	176-14	대	43	
374	마전동	176-15	대	274	
375	마전동	177-1	대	823	
376	마전동	177-2	대	188	
377	마전동	177-3	전	245	
378	마전동	178-1	전	83	
379	마전동	178-2	대	443	
380	마전동	179-1	대	1,577	
381	마전동	180	대	577	
382	마전동	180-1	전	227	
383	마전동	180-2	대	404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384	마전동	180-3	도로	29	
385	마전동	180-4	도로	34	
386	마전동	180-5	전	108	
387	마전동	180-6	도로	9	
388	마전동	181-1	대	845	
389	마전동	181-7	전	169	
390	마전동	181-9	답	77	
391	마전동	181-10	대	44	
392	마전동	183	답	78	
393	마전동	185	전	767	
394	마전동	186	전	663	
395	마전동	186-1	대	362	
396	마전동	187	답	173	
397	마전동	188	전	161	
398	마전동	188-1	하천	84	
399	마전동	191	전	43	
400	마전동	192	답	1,763	
401	마전동	192-1	답	1,762	
402	마전동	193	답	2,405	
403	마전동	195-1	하천	71	
404	마전동	196	잡종지	687	
405	마전동	196-1	하천	246	
406	마전동	196-2	도로	89	
407	마전동	196-3	잡종지	1,249	
408	마전동	197	답	1,611	
409	마전동	197-1	답	1,162	
410	마전동	197-2	답	308	
411	마전동	198	답	666	
412	마전동	198-1	답	902	
413	마전동	198-2	답	1,381	
414	마전동	198-3	답	1,440	
415	마전동	198-4	답	1,350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416	마전동	199	답	2,909	
417	마전동	199-1	답	2,000	
418	마전동	200-1	답	1,079	
419	마전동	200-2	답	443	
420	마전동	200-3	답	3,812	
421	마전동	200-4	답	893	
422	마전동	200-5	답	1,137	
423	마전동	200-6	답	1,080	
424	마전동	200-7	답	1,276	
425	마전동	201	답	882	
426	마전동	201-1	답	1,003	
427	마전동	201-2	답	760	
428	마전동	201-3	답	148	
429	마전동	201-4	답	26	
430	마전동	201-5	답	269	
431	마전동	202-1	대	711	
432	마전동	202-2	도로	189	
433	마전동	202-3	대	480	
434	마전동	202-4	공장용지	1,050	
435	마전동	202-5	대	338	
436	마전동	202-6	잡종지	18	
437	마전동	202-7	잡종지	35	
438	마전동	202-8	도로	188	
439	마전동	202-9	대	265	
440	마전동	202-10	대	111	
441	마전동	202-11	대	123	
442	마전동	202-12	잡종지	307	
443	마전동	203-1	도로	192	
444	마전동	203-2	대	468	
445	마전동	203-3	답	429	
446	마전동	203-4	대	28	
447	마전동	204-3	답	482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448	마전동	204-4	답	37	
449	마전동	205	대	287	
450	마전동	205-1	대	254	
451	마전동	205-2	답	939	
452	마전동	205-3	답	480	
453	마전동	205-4	답	30	
454	마전동	205-5	도로	74	
455	마전동	205-6	답	187	
456	마전동	205-7	답	610	
457	마전동	205-8	대	287	
458	마전동	205-9	대	287	
459	마전동	205-10	대	65	
460	마전동	205-11	답	454	
461	마전동	205-12	답	429	
462	마전동	205-13	답	431	
463	마전동	205-14	대	291	
464	마전동	205-15	대	290	
465	마전동	206	대	610	
466	마전동	206-1	도로	178	
467	마전동	206-2	대	788	
468	마전동	206-3	답	655	
469	마전동	207	대	431	
470	마전동	207-1	대	134	
471	마전동	208	답	3,775	
472	마전동	209	전	760	
473	마전동	210-1	전	450	
474	마전동	210-2	목장용지	504	
475	마전동	210-3	전	711	
476	마전동	210-4	전	2,117	
477	마전동	211	전	383	
478	마전동	212	전	1,884	
479	마전동	212-1	공장용지	19,281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480	마전동	212-2	답	1,342	
481	마전동	213	답	3,666	
482	마전동	214	전	2,307	
483	마전동	215	대	629	
484	마전동	215-1	대	178	
485	마전동	216	대	350	
486	마전동	216-1	대	510	
487	마전동	217-1	도로	294	
488	마전동	217-2	대	347	
489	마전동	217-3	대	275	
490	마전동	217-5	도로	23	
491	마전동	218-1	도로	136	
492	마전동	218-2	잡종지	559	
493	마전동	218-3	대	450	
494	마전동	218-4	대	449	
495	마전동	219-1	전	2,426	
496	마전동	219-2	도로	225	
497	마전동	220	대	474	
498	마전동	220-1	대	478	
499	마전동	221-1	전	497	
500	마전동	221-2	전	181	
501	마전동	221-3	전	281	
502	마전동	221-4	전	175	
503	마전동	221-5	대	96	
504	마전동	221-6	전	370	
505	마전동	221-7	전	282	
506	마전동	221-8	전	607	
507	마전동	222	전	438	
508	마전동	222-1	전	2,444	
509	마전동	222-2	전	437	
510	마전동	223-1	전	722	
511	마전동	223-2	전	969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512	마전동	223-3	전	30	
513	마전동	223-8	전	106	
514	마전동	223-9	전	884	
515	마전동	223-10	전	1,075	
516	마전동	223-12	전	546	
517	마전동	223-13	전	482	
518	마전동	223-14	전	297	
519	마전동	223-15	전	1,188	
520	마전동	223-19	전	604	
521	마전동	224-2	전	48	
522	마전동	224-3	전	777	
523	마전동	224-4	전	1,269	
524	마전동	224-5	전	1,881	
525	마전동	224-6	전	661	
526	마전동	224-7	전	492	
527	마전동	224-8	전	978	
528	마전동	224-9	전	805	
529	마전동	226	답	547	
530	마전동	226-1	답	587	
531	마전동	226-2	대	412	
532	마전동	226-3	답	5,215	
533	마전동	226-4	답	546	
534	마전동	226-5	답	642	
535	마전동	226-6	답	89	
536	마전동	226-7	답	547	
537	마전동	226-8	답	547	
538	마전동	226-9	답	637	
539	마전동	226-10	답	538	
540	마전동	226-11	답	537	
541	마전동	226-12	답	656	
542	마전동	226-13	답	586	
543	마전동	227	답	770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544	마전동	227-1	답	787	
545	마전동	228	답	625	
546	마전동	228-1	답	625	
547	마전동	228-2	답	62	
548	마전동	229	답	2,547	
549	마전동	229-1	답	848	
550	마전동	229-2	답	346	
551	마전동	229-3	답	470	
552	마전동	229-4	답	470	
553	마전동	230	잡종지	215	
554	마전동	230-1	잡종지	496	
555	마전동	230-2	잡종지	489	
556	마전동	231	전	14	
557	마전동	231-1	전	749	
558	마전동	231-2	전	351	
559	마전동	232	전	2,175	
560	마전동	233	답	2,375	
561	마전동	233-1	하천	283	
562	마전동	234	답	636	
563	마전동	234-1	하천	58	
564	마전동	235	전	197	
565	마전동	235-1	하천	659	
566	마전동	235-2	전	463	
567	마전동	236-1	전	21	
568	마전동	236-2	임야	102	
569	마전동	236-3	전	622	
570	마전동	236-5	전	835	
571	마전동	237	전	868	
572	마전동	237-1	구거	19	
573	마전동	237-2	하천	1,141	
574	마전동	237-3	전	27	
575	마전동	237-4	전	52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576	마전동	237-5	구거	18	
577	마전동	237-6	하천	841	
578	마전동	237-7	하천	1	
579	마전동	237-8	구거	5	
580	마전동	238	전	841	
581	마전동	238-1	전	489	
582	마전동	238-4	전	197	
583	마전동	238-5	하천	55	
584	마전동	238-6	과수원	1,954	
585	마전동	238-7	과수원	2,051	
586	마전동	238-8	전	654	
587	마전동	238-9	하천	113	
588	마전동	239-1	전	855	
589	마전동	239-2	전	815	
590	마전동	239-4	도로	17	
591	마전동	239-5	전	609	
592	마전동	240-3	구거	15	
593	마전동	240-4	하천	11	
594	마전동	240-5	대	815	
595	마전동	240-7	대	395	
596	마전동	240-8	구거	47	
597	마전동	240-9	구거	33	
598	마전동	240-10	하천	80	
599	마전동	241-7	전	297	
600	마전동	241-8	도로	1	
601	마전동	242-1	전	27	
602	마전동	287-20	전	77	
603	마전동	287-21	구거	31	
604	마전동	287-22	하천	117	
605	마전동	287-23	전	7	
606	마전동	287-24	구거	2	
607	마전동	287-25	구거	33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608	마전동	287-26	하천	3	
609	마전동	290-4	답	478	
610	마전동	290-5	답	832	
611	마전동	290-9	답	83	
612	마전동	290-10	답	50	
613	마전동	291	답	1,508	
614	마전동	291-6	대	465	
615	마전동	291-10	답	32	
616	마전동	291-11	답	193	
617	마전동	291-12	답	711	
618	마전동	291-13	답	46	
619	마전동	291-14	답	32	
620	마전동	294-6	답	72	
621	마전동	294-7	도로	36	
622	마전동	296-5	도로	7	
623	마전동	296-6	도로	149	
624	마전동	297-4	도로	151	
625	마전동	297-6	도로	33	
626	마전동	298-3	도로	46	
627	마전동	298-5	도로	212	
628	마전동	298-7	도로	3	
629	마전동	299-4	도로	41	
630	마전동	299-6	도로	13	
631	마전동	299-7	도로	2	
632	마전동	300-2	도로	7	
633	마전동	300-4	도로	23	
634	마전동	300-6	도로	18	
635	마전동	301-3	도로	63	
636	마전동	301-4	도로	50	
637	마전동	301-5	도로	3	
638	마전동	301-6	전	143	
639	마전동	301-7	전	433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640	마전동	301-8	답	91	
641	마전동	301-20	도로	464	
642	마전동	301-21	도로	181	
643	마전동	301-23	도로	41	
644	마전동	301-24	도로	132	
645	마전동	302-1	대	760	
646	마전동	302-2	도로	7	
647	마전동	302-3	답	218	
648	마전동	302-4	도로	10	
649	마전동	302-5	답	10	
650	마전동	302-6	도로	106	
651	마전동	303	잡종지	212	
652	마전동	304-1	잡종지	355	
653	마전동	304-2	도로	20	
654	마전동	304-3	도로	10	
655	마전동	304-5	도로	88	
656	마전동	305-1	대	377	
657	마전동	305-2	도로	23	
658	마전동	305-3	도로	23	
659	마전동	305-5	도로	109	
660	마전동	305-6	도로	95	
661	마전동	306-2	도로	3	
662	마전동	307-1	도로	23	
663	마전동	307-2	답	49	
664	마전동	307-3	답	3	
665	마전동	307-4	도로	43	
666	마전동	307-5	답	23	
667	마전동	307-6	답	51	
668	마전동	308-1	도로	36	
669	마전동	308-2	도로	112	
670	마전동	308-3	전	620	
671	마전동	308-4	전	26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672	마전동	308-5	임야	28	
673	마전동	308-7	대	207	
674	마전동	308-9	도로	73	
675	마전동	308-10	도로	22	
676	마전동	308-11	도로	10	
677	마전동	308-12	도로	31	
678	마전동	308-13	전	64	
679	마전동	311	전	108	
680	마전동	311-1	도로	64	
681	마전동	312-2	전	123	
682	마전동	312-4	도로	5	
683	마전동	312-5	도로	109	
684	마전동	313-2	도로	39	
685	마전동	316-15	답	1	
686	마전동	316-16	답	1,282	
687	마전동	342	주유소용지	1,001	
688	마전동	342-1	답	1,518	
689	마전동	342-2	답	2,714	
690	마전동	342-3	답	417	
691	마전동	342-4	답	775	
692	마전동	342-5	답	1,509	
693	마전동	342-6	답	776	
694	마전동	342-7	답	776	
695	마전동	342-8	답	359	
696	마전동	344	답	833	
697	마전동	344-1	답	1,758	
698	마전동	344-2	답	1,984	
699	마전동	344-3	답	1,129	
700	마전동	348	답	610	
701	마전동	348-1	답	875	
702	마전동	348-2	답	2,727	
703	마전동	348-3	답	3,315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704	마전동	348-4	답	1,781	
705	마전동	351	답	2,107	
706	마전동	351-1	답	2,647	
707	마전동	351-2	답	1,761	
708	마전동	351-3	답	24	
709	마전동	416	구거	657	
710	마전동	416-2	구거	395	
711	마전동	416-14	구거	105	
712	마전동	416-16	구거	438	
713	마전동	416-17	구거	8	
714	마전동	416-18	도로	123	
715	마전동	417	구거	2,979	
716	마전동	417-2	도로	1,621	
717	마전동	417-7	구거	1,632	
718	마전동	724-26	전	495	
719	마전동	724-27	하천	228	
720	마전동	724-28	하천	49	
721	마전동	724-29	전	581	
722	마전동	724-30	하천	41	
723	마전동	724-33	전	695	
724	마전동	724-35	하천	128	
725	마전동	724-36	하천	13,911	
726	마전동	724-41	하천	39	
727	마전동	724-42	하천	97	
728	마전동	724-47	하천	77	
729	마전동	727-1	도로	5,063	
730	마전동	728-1	도로	49	
731	마전동	728-2	도로	17	
732	마전동	728-3	도로	25	
733	마전동	728-4	도로	49	
734	마전동	733	도로	446	
735	마전동	734-1	도로	871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736	마전동	734-3	도로	10	
737	마전동	734-4	도로	341	
738	마전동	735-1	도로	1	
739	마전동	산16-4	임야	75	
740	마전동	산16-5	임야	32	
741	마전동	산16-6	임야	128	
742	마전동	산16-7	임야	12	
743	마전동	산16-8	도로	3	
744	마전동	산17-1	임야	1,189	
745	마전동	산17-2	임야	298	
746	마전동	산17-3	임야	893	
747	마전동	산17-6	임야	655	
748	마전동	산17-7	임야	449	
749	마전동	산18	임야	397	
750	마전동	산19	임야	893	
751	마전동	산20-1	임야	771	
752	마전동	산20-2	임야	25	
753	마전동	산21	임야	595	
754	마전동	산22-1	임야	332	
755	마전동	산24-4	임야	2,875	
756	마전동	산25	임야	397	
757	마전동	산26-2	임야	4,265	
758	마전동	산26-3	임야	2,179	
759	마전동	산28-4	임야	1,543	
760	마전동	산28-7	임야	1,463	
761	마전동	산28-8	임야	172	
762	마전동	산28-9	임야	978	
763	마전동	산28-10	임야	1,344	
764	마전동	산28-11	임야	1,006	
765	마전동	산29-1	임야	4,618	
766	마전동	산30-1	임야	2,612	
767	마전동	산31-7	임야	180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768	마전동	산31-8	임야	146	
769	마전동	산31-9	임야	1,469	
770	마전동	산31-10	임야	1,648	
771	마전동	산31-11	임야	102	
772	마전동	산32-2	임야	992	
773	마전동	산32-3	임야	296	
774	마전동	산32-4	임야	1,302	
775	마전동	산32-5	임야	1,107	
776	마전동	산33-8	임야	993	
777	마전동	산33-10	임야	549	
778	마전동	산33-11	임야	277	
779	마전동	산33-17	임야	29	
780	마전동	산33-18	임야	2,244	
781	마전동	산33-19	임야	1,667	
782	마전동	산33-20	임야	1,156	
783	마전동	산34-2	임야	601	
784	마전동	산34-5	임야	5,395	
785	마전동	산34-6	임야	685	
786	마전동	산34-7	임야	697	
787	마전동	산35-5	임야	953	
788	마전동	산35-6	임야	81	
789	마전동	산60-1	임야	2,118	
790	마전동	산72-9	임야	236	
791	마전동	산73-1	임야	1,747	
792	마전동	산74-1	임야	6,151	
793	마전동	산75	임야	893	
794	마전동	산76-1	임야	1,833	
795	마전동	산80-1	임야	1,860	
796	마전동	산82-4	임야	118	
797	마전동	산83-1	임야	5,589	
798	마전동	산83-4	임야	5,589	
799	마전동	산84	임야	893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800	마전동	산85-3	임야	2,246	
801	마전동	산85-4	임야	910	
802	마전동	산85-5	임야	1,855	
803	마전동	산85-6	임야	1,758	
804	마전동	산85-8	임야	688	
805	마전동	산85-23	임야	2,899	
806	마전동	산85-24	임야	3,252	
807	마전동	산85-25	임야	947	
808	마전동	산85-26	임야	117	
809	마전동	산85-27	임야	711	
810	마전동	산85-28	임야	1,301	
811	마전동	산85-29	임야	831	
812	마전동	산85-30	임야	776	
813	마전동	산85-34	임야	3,375	
814	마전동	산85-36	임야	5,729	
815	마전동	산87-1	임야	2,866	
816	마전동	산89	임야	7,181	
817	마전동	산89-1	임야	3,034	
818	마전동	산90	임야	694	
819	마전동	산91-4	임야	810	
820	마전동	산91-5	임야	1,868	
821	마전동	산91-7	임야	340	
822	마전동	산91-8	임야	35	
823	마전동	산91-9	임야	248	
824	마전동	산91-10	임야	130	
825	마전동	산91-11	임야	429	
826	마전동	산91-12	임야	3,157	
827	마전동	산92-11	임야	1,903	
828	마전동	산92-12	임야	280	
829	마전동	산92-13	임야	520	
830	마전동	산92-14	임야	1	
831	마전동	산92-15	임야	244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832	마전동	산92-17	임야	441	
833	마전동	산93-3	임야	199	
834	마전동	산93-4	임야	93	
835	마전동	산94-1	임야	430	
836	마전동	산95-1	임야	819	
837	마전동	산95-2	임야	821	
838	마전동	산96-7	임야	1,507	
839	마전동	산96-8	임야	1,506	
840	마전동	산96-9	임야	1,912	
841	마전동	산97-6	임야	561	
842	마전동	산98-3	임야	7	
843	마전동	산110-2	도로	21	
844	대곡동	산187-3	임야	5	
845	대곡동	산187-9	임야	68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합 계	**563필지**			**607,143.1**	
1	마전동	1125	공	310.7	
2	마전동	1125-1	도	767.1	
3	마전동	1125-2	대	513.5	
4	마전동	1125-3	공	504.1	
5	마전동	1125-4	도	29.8	
6	마전동	1125-5	공	554.6	
7	마전동	1125-6	대	10,070.2	
8	마전동	1125-7	대	2,285.3	
9	마전동	1125-8	대	151.5	
10	마전동	1125-9	대	452.4	
11	마전동	1125-10	대	423.8	
12	마전동	1125-11	대	263.6	
13	마전동	1125-12	대	282.5	
14	마전동	1125-13	대	455.2	
15	마전동	1125-14	대	372.4	
16	마전동	1125-15	대	310.7	
17	마전동	1125-16	대	441.2	
18	마전동	1125-17	대	352.2	
19	마전동	1125-18	대	273.7	
20	마전동	1125-19	공	126.3	
21	마전동	1125-20	도	16.4	
22	마전동	1126	대	389.9	
23	마전동	1126-1	대	390.8	
24	마전동	1126-2	대	344.9	
25	마전동	1126-3	대	1,579.6	
26	마전동	1126-4	대	501.1	
27	마전동	1126-5	대	1,545.9	
28	마전동	1126-6	대	781.9	
29	마전동	1126-7	대	365.8	
30	마전동	1126-8	대	2,025.4	
31	마전동	1126-9	대	605.8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32	마전동	1126-10	대	598.2	
33	마전동	1126-11	대	420.1	
34	마전동	1126-12	대	304.9	
35	마전동	1126-13	대	803.7	
36	마전동	1126-14	대	662.9	
37	마전동	1126-15	대	467.5	
38	마전동	1126-16	대	397.3	
39	마전동	1126-17	대	346.7	
40	마전동	1126-18	대	332.2	
41	마전동	1126-19	도	1,002.3	
42	마전동	1127	공	1,616.8	
43	마전동	1127-1	대	361.6	
44	마전동	1127-2	대	265.4	
45	마전동	1127-3	대	558.0	
46	마전동	1127-4	대	225.2	
47	마전동	1127-5	대	528.0	
48	마전동	1127-6	대	352.6	
49	마전동	1127-7	대	436.0	
50	마전동	1127-8	도	542.1	
51	마전동	1128	대	434.0	
52	마전동	1128-1	대	813.4	
53	마전동	1128-2	대	299.5	
54	마전동	1128-3	대	567.8	
55	마전동	1128-4	대	337.1	
56	마전동	1128-5	대	336.0	
57	마전동	1128-6	대	334.1	
58	마전동	1128-7	대	396.8	
59	마전동	1128-8	대	396.7	
60	마전동	1128-9	대	323.5	
61	마전동	1128-10	대	323.6	
62	마전동	1128-11	대	293.8	
63	마전동	1128-12	대	360.3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64	마전동	1128-13	대	423.5	
65	마전동	1128-14	대	278.2	
66	마전동	1128-15	대	239.1	
67	마전동	1128-16	대	324.4	
68	마전동	1128-17	대	653.0	
69	마전동	1129	대	393.0	
70	마전동	1129-1	대	487.2	
71	마전동	1129-2	대	749.4	
72	마전동	1129-3	대	613.5	
73	마전동	1129-4	대	353.2	
74	마전동	1129-5	대	495.9	
75	마전동	1129-6	대	540.1	
76	마전동	1129-7	대	370.7	
77	마전동	1129-8	대	558.5	
78	마전동	1129-9	대	371.4	
79	마전동	1129-10	대	514.3	
80	마전동	1129-11	대	801.8	
81	마전동	1129-12	대	821.3	
82	마전동	1129-13	대	767.6	
83	마전동	1129-14	대	960.9	
84	마전동	1129-15	대	372.5	
85	마전동	1129-16	대	375.5	
86	마전동	1129-17	도	2,230.6	
87	마전동	1129-18	도	196.5	
88	마전동	1129-19	대	1,207.4	
89	마전동	1129-20	대	316.5	
90	마전동	1129-21	대	281.2	
91	마전동	1129-22	대	1,728.0	
92	마전동	1129-23	대	570.4	
93	마전동	1129-24	대	528.0	
94	마전동	1129-25	대	513.8	
95	마전동	1129-26	대	496.3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96	마전동	1129-27	대	454.3	
97	마전동	1129-28	대	340.1	
98	마전동	1129-29	대	529.1	
99	마전동	1129-30	대	521.1	
100	마전동	1129-31	대	560.0	
101	마전동	1129-32	대	338.5	
102	마전동	1129-33	대	481.1	
103	마전동	1130	대	371.9	
104	마전동	1130-1	대	360.3	
105	마전동	1130-2	대	386.8	
106	마전동	1130-3	대	303.0	
107	마전동	1130-4	대	436.0	
108	마전동	1130-5	대	508.0	
109	마전동	1130-6	대	339.5	
110	마전동	1130-7	대	256.6	
111	마전동	1130-8	대	344.9	
112	마전동	1130-9	대	329.5	
113	마전동	1130-10	대	325.0	
114	마전동	1130-11	도	441.5	
115	마전동	1131	공	2,953.3	
116	마전동	1131-1	대	3,339.0	
117	마전동	1131-2	대	20,502.0	
118	마전동	1131-3	공	647.8	
119	마전동	1132	공	2,939.8	
120	마전동	1132-1	공	1,267.0	
121	마전동	1132-2	대	687.0	
122	마전동	1132-3	대	1,251.1	
123	마전동	1132-4	대	1,100.9	
124	마전동	1132-5	대	667.8	
125	마전동	1132-6	대	514.7	
126	마전동	1132-7	대	405.5	
127	마전동	1132-8	대	1,153.8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128	마전동	1132-9	대	1,147.3	
129	마전동	1132-10	대	1,573.2	
130	마전동	1132-11	대	1,358.8	
131	마전동	1133	대	251.9	
132	마전동	1133-1	대	323.7	
133	마전동	1133-2	대	284.2	
134	마전동	1133-3	대	488.0	
135	마전동	1133-4	대	217.8	
136	마전동	1133-5	대	316.8	
137	마전동	1133-6	대	289.7	
138	마전동	1133-7	대	202.0	
139	마전동	1133-8	대	338.9	
140	마전동	1133-9	대	399.4	
141	마전동	1133-10	대	376.5	
142	마전동	1133-11	대	334.2	
143	마전동	1133-12	대	503.3	
144	마전동	1134	대	204.9	
145	마전동	1134-1	대	645.2	
146	마전동	1134-2	대	510.8	
147	마전동	1134-3	대	446.6	
148	마전동	1134-4	대	176.7	
149	마전동	1134-5	대	296.1	
150	마전동	1134-6	도	93.9	
151	마전동	1134-7	대	443.4	
152	마전동	1134-8	대	418.4	
153	마전동	1134-9	대	313.2	
154	마전동	1134-10	대	280.0	
155	마전동	1135	대	287.9	
156	마전동	1135-1	대	346.9	
157	마전동	1135-2	대	740.1	
158	마전동	1135-3	대	264.3	
159	마전동	1135-4	대	458.4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160	마전동	1135-5	대	379.3	
161	마전동	1135-6	대	347.9	
162	마전동	1135-7	대	274.5	
163	마전동	1135-8	대	462.0	
164	마전동	1135-9	대	548.9	
165	마전동	1135-10	대	281.0	
166	마전동	1136	대	11,268.9	
167	마전동	1136-1	대	6,034.9	
168	마전동	1136-2	대	757.9	
169	마전동	1137	학	11,023.5	
170	마전동	1137-1	대	269.0	
171	마전동	1137-2	대	196.6	
172	마전동	1137-3	대	950.0	
173	마전동	1137-4	대	758.3	
174	마전동	1137-5	대	652.4	
175	마전동	1137-6	대	582.9	
176	마전동	1138	대	1,403.2	
177	마전동	1138-1	대	877.7	
178	마전동	1138-2	대	795.7	
179	마전동	1138-3	대	116.0	
180	마전동	1138-4	대	357.2	
181	마전동	1138-5	대	735.2	
182	마전동	1138-6	대	394.8	
183	마전동	1138-7	주	1,989.0	
184	마전동	1139	차	2,573.3	
185	마전동	1140	대	790.5	
186	마전동	1140-1	대	313.2	
187	마전동	1140-2	대	390.0	
188	마전동	1140-3	대	751.0	
189	마전동	1140-4	대	947.6	
190	마전동	1140-5	대	441.3	
191	마전동	1140-6	대	418.8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192	마전동	1140-7	대	504.7	
193	마전동	1140-8	대	700.4	
194	마전동	1141	대	525.4	
195	마전동	1141-1	대	478.7	
196	마전동	1141-2	대	369.0	
197	마전동	1141-3	대	697.2	
198	마전동	1142	대	742.9	
199	마전동	1142-1	대	281.6	
200	마전동	1142-2	대	152.0	
201	마전동	1142-3	대	718.5	
202	마전동	1142-4	대	328.5	
203	마전동	1142-5	대	594.9	
204	마전동	1142-6	대	199.3	
205	마전동	1142-7	대	397.5	
206	마전동	1142-8	대	336.8	
207	마전동	1142-9	대	317.8	
208	마전동	1142-10	대	135.1	
209	마전동	1142-11	대	123.7	
210	마전동	1142-12	대	262.2	
211	마전동	1142-13	대	231.6	
212	마전동	1142-14	도	42.3	
213	마전동	1143	차	1,919.5	
214	마전동	1144	공	257.0	
215	마전동	1144-1	대	394.4	
216	마전동	1144-2	대	305.4	
217	마전동	1144-3	대	305.4	
218	마전동	1144-4	대	305.7	
219	마전동	1144-5	대	347.2	
220	마전동	1144-6	대	298.9	
221	마전동	1144-7	대	298.1	
222	마전동	1144-8	대	295.5	
223	마전동	1144-9	대	292.0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224	마전동	1144-10	대	338.1	
225	마전동	1144-11	대	256.5	
226	마전동	1144-12	대	254.7	
227	마전동	1144-13	대	331.0	
228	마전동	1144-14	대	330.2	
229	마전동	1144-15	대	330.4	
230	마전동	1144-16	도	522.4	
231	마전동	1145	공	1,057.6	
232	마전동	1145-1	대	252.1	
233	마전동	1145-2	대	258.9	
234	마전동	1145-3	대	277.1	
235	마전동	1145-4	대	276.0	
236	마전동	1145-5	대	276.0	
237	마전동	1145-6	대	330.5	
238	마전동	1145-7	대	428.3	
239	마전동	1145-8	대	345.9	
240	마전동	1145-9	도	55.6	
241	마전동	1146	대	447.7	
242	마전동	1146-1	대	290.2	
243	마전동	1146-2	대	290.3	
244	마전동	1146-3	대	309.3	
245	마전동	1146-4	공	1,502.0	
246	마전동	1146-5	대	319.3	
247	마전동	1146-6	대	328.5	
248	마전동	1146-7	대	294.2	
249	마전동	1146-8	대	270.8	
250	마전동	1147	공	1,404.4	
251	마전동	1147-1	대	8,640.9	
252	마전동	1147-2	대	5,253.1	
253	마전동	1147-3	도	247.9	
254	마전동	1148	공	491.0	
255	마전동	1148-1	대	1,887.0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256	마전동	1148-2	대	5,210.1	
257	마전동	1148-3	대	19,192.1	
258	마전동	1149	공	4,006.9	
259	마전동	1149-1	공	570.5	
260	마전동	1149-2	대	658.2	
261	마전동	1149-3	대	1,482.6	
262	마전동	1149-4	대	685.6	
263	마전동	1149-5	도	106.7	
264	마전동	1149-6	대	1,099.7	
265	마전동	1149-7	대	319.1	
266	마전동	1149-8	대	3,400.9	
267	마전동	1149-9	도	58.1	
268	마전동	1149-10	대	298.0	
269	마전동	1149-11	대	524.3	
270	마전동	1149-12	대	393.9	
271	마전동	1149-13	대	451.2	
272	마전동	1149-14	대	642.9	
273	마전동	1149-15	대	305.0	
274	마전동	1149-16	대	1,414.0	
275	마전동	1149-17	대	988.8	
276	마전동	1149-18	도	122.9	
277	마전동	1150	대	15,939.0	
278	마전동	1150-1	대	2,766.6	
279	마전동	1151	대	5,121.2	
280	마전동	1151-1	대	14,765.0	
281	마전동	1151-2	대	681.1	
282	마전동	1151-3	공	2,110.9	
283	마전동	1152	대	192.9	
284	마전동	1152-1	대	203.2	
285	마전동	1152-2	대	309.2	
286	마전동	1152-3	대	234.8	
287	마전동	1152-4	대	424.1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288	마전동	1152-5	대	243.7	
289	마전동	1152-6	대	305.4	
290	마전동	1152-7	대	307.0	
291	마전동	1152-8	대	369.2	
292	마전동	1152-9	대	373.4	
293	마전동	1152-10	대	377.7	
294	마전동	1152-11	대	766.6	
295	마전동	1152-12	대	255.4	
296	마전동	1152-13	대	250.8	
297	마전동	1152-14	대	432.1	
298	마전동	1152-15	대	479.8	
299	마전동	1152-16	대	480.7	
300	마전동	1152-17	대	489.0	
301	마전동	1152-18	대	473.6	
302	마전동	1152-19	대	491.4	
303	마전동	1152-20	대	441.0	
304	마전동	1152-21	대	440.0	
305	마전동	1152-22	대	529.3	
306	마전동	1152-23	대	449.1	
307	마전동	1152-24	대	326.4	
308	마전동	1152-25	대	295.4	
309	마전동	1152-26	대	295.5	
310	마전동	1152-27	대	294.2	
311	마전동	1152-28	대	389.1	
312	마전동	1152-29	대	428.6	
313	마전동	1152-30	대	489.2	
314	마전동	1152-31	대	609.2	
315	마전동	1152-32	대	416.3	
316	마전동	1152-33	대	288.8	
317	마전동	1153	대	1,349.0	
318	마전동	1153-1	대	1,985.3	
319	마전동	1153-2	대	1,989.6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320	마전동	1153-3	대	2,087.2	
321	마전동	1153-4	대	2,087.0	
322	마전동	1153-5	대	2,086.7	
323	마전동	1153-6	대	1,172.8	
324	마전동	1153-7	대	1,200.5	
325	마전동	1153-8	대	2,044.6	
326	마전동	1153-9	도	54.7	
327	마전동	1154	대	368.3	
328	마전동	1154-1	대	263.5	
329	마전동	1154-2	대	705.4	
330	마전동	1154-3	대	326.8	
331	마전동	1154-4	대	346.1	
332	마전동	1154-5	대	1,539.7	
333	마전동	1154-6	도	62.9	
334	마전동	1154-7	대	752.5	
335	마전동	1154-8	대	651.8	
336	마전동	1154-9	대	651.0	
337	마전동	1154-10	대	654.2	
338	마전동	1154-11	학	13,936.0	
339	마전동	1154-12	대	1,888.4	
340	마전동	1154-13	도	259.1	
341	마전동	1155	대	258.7	
342	마전동	1155-1	대	281.4	
343	마전동	1155-2	대	278.9	
344	마전동	1155-3	대	279.1	
345	마전동	1155-4	대	353.0	
346	마전동	1155-5	대	291.5	
347	마전동	1155-6	대	463.0	
348	마전동	1155-7	대	263.2	
349	마전동	1155-8	대	263.2	
350	마전동	1155-9	대	262.5	
351	마전동	1155-10	대	262.5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352	마전동	1156	대	360.4	
353	마전동	1156-1	대	591.5	
354	마전동	1156-2	대	453.3	
355	마전동	1156-3	대	376.4	
356	마전동	1156-4	대	296.0	
357	마전동	1156-5	대	280.5	
358	마전동	1156-6	대	590.7	
359	마전동	1156-7	대	221.5	
360	마전동	1156-8	대	418.6	
361	마전동	1156-9	대	416.0	
362	마전동	1156-10	대	437.1	
363	마전동	1156-11	대	825.3	
364	마전동	1156-12	대	360.3	
365	마전동	1157	대	442.9	
366	마전동	1157-1	대	442.8	
367	마전동	1157-2	대	478.5	
368	마전동	1157-3	대	1,713.4	
369	마전동	1157-4	대	2,399.8	
370	마전동	1157-5	대	722.8	
371	마전동	1157-6	대	596.0	
372	마전동	1157-7	대	343.0	
373	마전동	1157-8	대	569.4	
374	마전동	1157-9	대	1,167.9	
375	마전동	1158	대	911.8	
376	마전동	1158-1	대	2,002.3	
377	마전동	1158-2	대	808.2	
378	마전동	1158-3	대	460.7	
379	마전동	1158-4	대	16,337.5	
380	마전동	1158-5	대	1,970.5	
381	마전동	1158-6	대	950.9	
382	마전동	1158-7	대	431.2	
383	마전동	1158-8	대	1,382.4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384	마전동	1158-9	대	1,050.5	
385	마전동	1158-10	대	713.1	
386	마전동	1158-11	대	948.3	
387	마전동	1158-12	대	18,099.4	
388	마전동	1159	대	1,864.7	
389	마전동	1159-1	대	354.8	
390	마전동	1159-2	대	354.7	
391	마전동	1159-3	대	715.6	
392	마전동	1159-4	대	423.1	
393	마전동	1159-5	대	413.6	
394	마전동	1159-6	대	536.6	
395	마전동	1160	대	391.2	
396	마전동	1160-1	대	879.0	
397	마전동	1160-2	대	291.4	
398	마전동	1160-3	대	291.4	
399	마전동	1160-4	대	339.2	
400	마전동	1160-5	대	330.6	
401	마전동	1160-6	대	370.3	
402	마전동	1160-7	대	320.9	
403	마전동	1160-8	대	320.9	
404	마전동	1160-9	대	320.9	
405	마전동	1160-10	대	311.0	
406	마전동	1160-11	대	236.5	
407	마전동	1160-12	대	224.5	
408	마전동	1160-13	대	390.6	
409	마전동	1161	대	707.2	
410	마전동	1161-1	대	447.4	
411	마전동	1161-2	대	437.4	
412	마전동	1161-3	대	321.0	
413	마전동	1161-4	대	378.7	
414	마전동	1161-5	대	607.7	
415	마전동	1161-6	대	272.1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416	마전동	1161-7	대	272.5	
417	마전동	1161-8	대	341.6	
418	마전동	1161-9	대	350.6	
419	마전동	1161-10	대	375.4	
420	마전동	1161-11	대	657.2	
421	마전동	1161-12	대	315.9	
422	마전동	1162	대	255.0	
423	마전동	1162-1	대	255.0	
424	마전동	1162-2	대	322.2	
425	마전동	1162-3	대	313.7	
426	마전동	1162-4	대	314.0	
427	마전동	1162-5	대	382.8	
428	마전동	1162-6	대	268.7	
429	마전동	1162-7	대	244.4	
430	마전동	1162-8	대	408.1	
431	마전동	1162-9	대	585.3	
432	마전동	1162-10	대	401.7	
433	마전동	1162-11	대	397.6	
434	마전동	1162-12	대	477.6	
435	마전동	1162-13	대	495.8	
436	마전동	1162-14	대	450.1	
437	마전동	1163	대	257.0	
438	마전동	1163-1	대	250.0	
439	마전동	1163-2	대	295.8	
440	마전동	1163-3	대	330.5	
441	마전동	1163-4	대	822.2	
442	마전동	1163-5	대	702.0	
443	마전동	1163-6	대	633.7	
444	마전동	1163-7	대	617.9	
445	마전동	1163-8	대	668.0	
446	마전동	1163-9	대	485.2	
447	마전동	1163-10	대	517.1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448	마전동	1164	대	658.0	
449	마전동	1164-1	대	260.0	
450	마전동	1164-2	대	255.5	
451	마전동	1164-3	대	255.5	
452	마전동	1164-4	대	255.5	
453	마전동	1164-5	대	253.2	
454	마전동	1164-6	대	260.0	
455	마전동	1164-7	대	260.0	
456	마전동	1164-8	대	289.6	
457	마전동	1164-9	대	285.5	
458	마전동	1165	대	311.3	
459	마전동	1165-1	대	263.6	
460	마전동	1165-2	대	595.3	
461	마전동	1165-3	대	480.0	
462	마전동	1165-4	대	484.3	
463	마전동	1165-5	대	453.5	
464	마전동	1165-6	대	656.0	
465	마전동	1165-7	대	639.8	
466	마전동	1165-8	공	3,495.3	
467	마전동	1166	대	250.0	
468	마전동	1166-1	대	269.7	
469	마전동	1166-2	대	247.8	
470	마전동	1166-3	대	247.8	
471	마전동	1166-4	공	244.0	
472	마전동	1166-5	대	374.5	
473	마전동	1166-6	대	260.0	
474	마전동	1166-7	대	622.5	
475	마전동	1166-8	대	420.9	
476	마전동	1166-9	대	420.1	
477	마전동	1167	공	6,896.4	
478	마전동	1167-1	차	927.7	
479	마전동	1167-2	대	260.2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480	마전동	1167-3	대	273.6	
481	마전동	1167-4	대	268.5	
482	마전동	1167-5	대	260.0	
483	마전동	1167-6	대	262.1	
484	마전동	1167-7	대	356.0	
485	마전동	1167-8	대	343.4	
486	마전동	1167-9	대	713.7	
487	마전동	1167-10	대	474.6	
488	마전동	1167-11	도	69.4	
489	마전동	1167-12	대	463.2	
490	마전동	1167-13	대	451.5	
491	마전동	1167-14	대	475.5	
492	마전동	1167-15	대	553.7	
493	마전동	1167-16	대	420.1	
494	마전동	1167-17	대	420.6	
495	마전동	1167-18	대	422.1	
496	마전동	1167-19	대	422.1	
497	마전동	1167-20	대	601.0	
498	마전동	1167-21	대	541.9	
499	마전동	1167-22	도	68.9	
500	마전동	1167-23	대	879.7	
501	마전동	1167-24	대	485.9	
502	마전동	1167-25	대	345.5	
503	마전동	1167-26	대	300.0	
504	마전동	1167-27	대	385.6	
505	마전동	1167-28	대	327.3	
506	마전동	1167-29	대	348.7	
507	마전동	1167-30	대	300.0	
508	마전동	1167-31	대	300.5	
509	마전동	1167-32	대	300.0	
510	마전동	1168	공	187.1	
511	마전동	1168-1	대	339.3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512	마전동	1168-2	대	397.7	
513	마전동	1168-3	대	401.2	
514	마전동	1168-4	대	401.3	
515	마전동	1168-5	대	470.9	
516	마전동	1169	도	13,092.4	
517	마전동	1170	도	17,576.1	
518	마전동	1171	도	1,024.8	
519	마전동	1172	도	2,157.2	
520	마전동	1173	도	2,941.5	
521	마전동	1174	도	4,847.1	
522	마전동	1175	도	146.5	
523	마전동	1176	도	152.5	
524	마전동	1177	도	2,111.9	
525	마전동	1178	도	3,105.0	
526	마전동	1179	도	2,414.9	
527	마전동	1180	도	718.6	
528	마전동	1181	도	527.3	
529	마전동	1182	도	328.2	
530	마전동	1183	도	1,065.2	
531	마전동	1184	도	494.6	
532	마전동	1185	도	5,909.0	
533	마전동	1186	도	2,142.9	
534	마전동	1187	도	814.6	
535	마전동	1188	도	1,125.8	
536	마전동	1189	도	117.3	
537	마전동	1190	도	896.9	
538	마전동	1191	도	7,781.9	
539	마전동	1192	도	432.8	
540	마전동	1193	도	235.8	
541	마전동	1194	도	7,209.1	
542	마전동	1195	도	1,525.9	
543	마전동	1196	도	1,421.4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544	마전동	1197	도	659.6	
545	마전동	1198	도	1,011.7	
546	마전동	1199	도	668.0	
547	마전동	1200	도	1,270.0	
548	마전동	1201	도	18,459.8	
549	마전동	1202	도	1,153.8	
550	마전동	1203	도	706.8	
551	마전동	1204	도	794.5	
552	마전동	1205	도	702.8	
553	마전동	1206	도	1,105.3	
554	마전동	1207	도	7,566.4	
555	마전동	1208	도	337.6	
556	마전동	1209	도	1,623.3	
557	마전동	1210	도	1,103.2	
558	마전동	1211	도	449.0	
559	마전동	1212	도	2,228.3	
560	마전동	1213	도	41.1	
561	마전동	1214	천	8,082.6	
562	마전동	1215	천	366.9	
563	마전동	1216	천	4,544.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793호

경서3구역 지장물(존치건물 경계) 보상계획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46호(2010. 8. 23.)로 고시된『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본 계획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다.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66번지 일원
 라. 사 업 면 적: 368,085㎡
 마. 사 업 기 간: 2010년 8월 23일(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보상의 물건
 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59번지
 나. 보상대상: 경서3구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일체

※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조서의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지하오니, 기타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는 보상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별 송달 시 주소변경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2021. 5. 3.(월) ~ 2021. 5. 18.(화) (14일 이상)

나.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 032-560-475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다. 열람: 열람기간 중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가능합니다.

라. 이의신청: 열람공고 및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인천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도시행정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의 시기

가. 보상시기: 지장물 감정평가 후(2021년 5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

나. 기 타: 보상계획 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서구청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보상금 산정

나. 보상금 지급방법

1) 지급방법: 현금보상(계좌입금)

2) 보상장소, 보상금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

다. 보상절차

1) 보상계획 공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재결금액 지급 및 공탁

2)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와 서구청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나. 물건조사시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 등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 본 열람공고와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등을 확인바라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7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친화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 4대 권리의 구체적 명시 및 조항 정비(안 제2조)
○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의 설치 명시(안 제3조)
○ 구체적 아동 비차별 요소 명시(안 제3조의2제1호)
○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명시(안 제5조)
○ 시민의견수렴의 시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아동영향평가 수당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 어린이 참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6조~제18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23조)

○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관련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1조)
○ 옴부즈퍼슨 제도 근거 조항 명시(안 제32조～제3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행복과, 전화 560-5757,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친화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4대 권리의 구체적 명시 및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의 설치 명시(안 제3조)

다. 구체적 아동 비차별 요소 명시(안 제3조의2제1호)

라. 아동 예산 확보 및 분석 명시(안 제5조)

마. 시민의견수렴의 시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바. 아동영향평가 수당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사. 어린이 참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6조～제18조)

아.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23조)

자.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관련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1조)

차. 옴부즈퍼슨 제도 근거 조항 명시(안 제32조～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으로”를 “지역으로,”로 하며, “보장하는”을 “보장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인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으로 한다.

제5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의2(종전의 제5조)의 제목 “(기본원칙 등)”을 “(조성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5조) 제1호 중 “차별받지 않고”를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

해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제안한 의견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사업부서의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구 아동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검토 결과를 알릴 수 있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민의견수렴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자체 일반현황 및 제11조의 아동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초해서 선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아동,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아동권리옹호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당) 구청장은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제13조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중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④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아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수집단 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보호자 및 아동대표자

8.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

제6장(제29조 및 제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제29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 각 부서의 장이 된다.

제30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4. 아동참여기구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제31조(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장(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32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34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성별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

5. 아동보호자 및 아동 대표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옴부즈퍼슨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해촉)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6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를 제3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1. ---------- 미만인 ----------. 2. ---------- 지역으로, ---------- 보장하며, ----------.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신 설>	4. “아동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인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제2장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조성원칙) ----------.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1. ---------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않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② (생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③ ----------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생 략)	제10조(아동 참여보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제안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사업부서의 검토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구 아동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검토결과를 알릴 수 있다.
제10조의3(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조치를 위하여 아동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인권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충	<삭 제>

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3. 아동인권 관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제도에 대한 건의 4.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연계 등[본조 신설 2018.11.8.]	
<신 설>	제11조의2(시민의견수렴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자체 일반현황 및 제11조의 아동실태 조사의 결과를 기초해서 선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아동,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아동권리옹호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수당) 구청장은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제13조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 ---------- ---------- 필요한 ---------- ---------.
제16조(기능)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7조(구성) ① 어린이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신 설>	④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아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수집단 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1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5장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 보호자 대표	5. 아동 보호자 및 아동대표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신 설>	제29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 각 부서의 장이 된다.
<신 설>	제30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4. 아동참여기구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신 설>	제31조(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

	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 설>	제7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신 설>	제32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신 설>	제34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성별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 5. 아동보호자 및 아동대표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옴부즈퍼슨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35조(해촉)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 설>	제36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생 략)	제37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의 견 수 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7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1.1.1. 시행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사무 이양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3조)

다. 교육의 위탁(안 제4조)

라. 교육실시 방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7,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1.1.1. 시행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사무 이양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관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교육 시행을 도모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

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4.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 자료 요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32조**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799호

국·공유지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국·공유지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5. 3. ~ 2021. 5. 21.(15일 이상)

3. 공고대상 및 내역: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1-21, 불로동 311-37 불로동 산61, 불로동 산107-8 일원	농작물 능형망 및 나무 휀스 의자 외 기타 경작관련 시설물 등	1,364㎡	자체 집행 (철거)

4. 송달할 서류의 종류: 행정대집행 계고서(별첨)

5. 공고 및 게시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6. 지시 및 고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관할법원(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을 갈음합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과(☎ 032-56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도시기반과 - 0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 상
소 재 지: 불로동 311-21, 불로동 311-37, 불로동 산61, 불로동 산107-8

귀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1-21, 불로동 311-37, 불로동 산 61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관 구유지 및 **불로동 산107-8 일원**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재산 내 불법경작행위 및 불법경작 관련 시설물(농작물, 기타 철근, 의자, 능형망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는「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같은 법 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심미관 저해, 민원발생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5월21일까지** 반드시 불법 농작물 및 불법경작 관련 시설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1-21, 불로동 311-37 불로동 산61, 불로동 산107-8 일원	농작물 능형망 및 나무 휀스 의자 외 기타 경작관련 시설물 등	1,364㎡	자체 집행 (철거)

2021년 05월 0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 관련지번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불로동 311-21	답	264	인천 서구청	행정재산
2	불로동 311-37	답	16	인천 서구청	〃
3	불로동 산61	임	499	인천 서구청	〃
4	불로동 산107-8	도	585	국토교통부	〃

항공사진(불로동 311-21번지 외 3필지)

현장사진

현장사진

행정대집행 사전 통지 안내
불법 점 사용행위 금지 안내
○ 본 지역은 국유지 및 공유지로, 무단으로 점용
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행위(경작 포함)는 국유
재산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에는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에 처하게
되오니 즉시 철거 및 원상복구 바랍니다.

현장사진

국 공유지
서구
블로동 311-21, 311-37, 산61, 산107-8,
설치한 경작 관련 시설물들을 행정
이후 철거하지 아니하여 훼손된 시설물 등은 우리

현장사진

현장사진

인천광역시서구 제2021-80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1. 5. 3. ~ 2021. 5. 17.(15일간)

2. 공 고 내 용

<table>
<tr><td colspan="2">1. 행 정 처 분 제 목</td><td colspan="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td></tr>
<tr><td rowspan="2">2. 대상차량</td><td>등록번호</td><td colspan="4" rowspan="2">99고3378 외 4건(붙임 참조)</td></tr>
<tr><td>차 명</td></tr>
<tr><td colspan="2">3. 운 행 정 지 사 유</td><td colspan="4">소유자의 요청 등</td></tr>
<tr><td colspan="2">4. 법 적 근 거</td><td colspan="4">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td></tr>
<tr><td colspan="2" rowspan="2">5. 관 할 관 청</td><td>기관명</td><td>인천광역시 서구청</td><td>담당부서</td><td>차량민원과</td></tr>
<tr><td>주소</td><td colspan="3">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td></tr>
</table>

3. 유 의 사 항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5747)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99고3378	Axor	유*수	2021.04.07
2	60버6763	프린스2.0LPGAT	박*선	2021.04.13
3	경기37구7317	프라이드베타	양*석	2021.04.15
4	35구4373	쏘렌토	김*선	2021.04.15
5	18도8944	SM5	최*호	2021.04.26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8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에 대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게 되어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과 마전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비, 신규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기능 및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의 근거 조항 표기 오류를 정정하고, 체육시설 개방시간 및 휴관일을 개정하여 관내 체육시설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체육시설 사용료를 사용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5년으로 하되 ⇒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안 제16조제3항]

나. 신축 체육시설 기능 및 위치 명시 (안 [별표 1])
- 항목추가 :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 항목추가 : 마전 다목적체육관

다.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 (안 [별표 2])
- 근거 조항 (제6조 관련) ⇒ (제10조 관련) 개정

라. 체육시설 사용료 (안 [별표 3])
- 표 제목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13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에 대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게 되어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과 마전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비, 신규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기능 및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의 근거 조항 표기 오류를 정정하고, 체육시설 개방시간 및 휴관일을 개정하여 관내 체육시설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체육시설 사용료를 사용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5년으로 하되 ⇒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안 제16조제3항]

나. 신축 체육시설 기능 및 위치 명시 (안 [별표 1])

- 항목추가 :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 항목추가 : 마전 다목적체육관

다.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 (안 [별표 2])

- 근거 조항 (제6조 관련) ⇒ (제10조 관련) 개정

라. 체육시설 사용료 (안 [별표 3])

- 표 제목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삭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없음”

라. 관계법령발췌 :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설명	기 능	위 치	비고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RC경기장 등 체육활동 - 체육분야 강습 프로그램	서구 청라동 7-17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서구 가좌동 1-11	
마전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서구 마전동 905-6,7	

[별표 2]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제10조 관련)

대 상 시 설	개방시간	휴 관 일	기타
조례 제3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평일> 06:00 ~ 22:00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 09:00 ~ 20:00	● 명절(신정, 구정, 추석) 연휴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별표 3]

□ 체육시설 사용료 (제11조 관련)

사용종목(시설)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배드민턴장	2시간(1코트) 1일 1회 1인	1,000	-
게이트볼장	2시간 1일 1회	1,000	
테니스장	2시간(1코트) 1일 1회 1인	1,000	
풋살장	2시간(1면) 1일 1회	5,000	
족구장	2시간(1면) 1일 1회 1인	1,000	
농구장	2시간 1일 1회 1인	1,000	
RC경기장	2시간 1일 1인	1,000	
다목적 체육관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실내 대관 2시간	5,000	
	실외	무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운영 위탁 등) ① ~ ②(생 략)	제16조(운영 위탁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8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내용의 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원 구성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의 구성인원 변경 [안 제3조제1항]

⇒ 구청장과 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

나. 부의장 변경: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 ⇒ 서구체육회장 [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13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내용의 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원 구성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의 구성인원 변경 **[안 제3조제1항]**

⇒ 구청장과 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

나. 부의장 변경: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 ⇒ 서구체육회장 **[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없 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 15명 이내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장(이하 “서구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을 “서구체육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장(이하 “서구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이 된다.	② ----------서구체육회장----------.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제5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